

생애주기별 복지상식

2018년 12월 31일 작업 파일

이용교

드림미디어

머리말

필자가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복지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시작한 지 20여년이 되었다. 2014년부터 광주드림에 매주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연재하고 있다. 2018년 한 해동안 쓴 44편의 원고를 묶어서 '생애주기별 복지상식'으로 출판한다. 모든 국민이 '복지로'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검색하고 이를 널리 활용하길 기대한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등을 합치면 시민이 정부나 사회보험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40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읍·면·동에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신청, 교육급여라는 5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국가는 어떤 국민은 복지급여의 수급 기준에 맞더라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굳이 복지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복지급여, 특히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에 대한 각종 복지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복지급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필요한 복지정보를 클릭하기 바란다. 복지로는 생애주기별, 관심 집단별, 주요 영역별로 복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급여를 잘 활용하려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계산하여 선정된다. 즉,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적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별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가 노인이면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고, 젊은이면 부모(미혼이면 부모, 기혼여성이면 시부모, 이혼여성이면 친정부모)이기에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부양비를 산정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해당 가구가 가난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의 수급여부는 복지로서 바로 확인할 수 없기에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계산해봄 직하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의해 결정된다. 모의 계산하기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과 같은 자주 쓰는 낱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등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진다.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다양한 복지급여의 수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중요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어떤 순간에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복지급여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6% 내외이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70%에 가깝다.

·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신청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이 긴 급복지를 신청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늘어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1억1000만 원인 대학생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월 300만 원 이하의 대학생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복지급여 수급에서 ‘신청’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 모든 국민이 복지로서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복지급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누구든지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바란다.

· 복지포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위쪽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기 바란다. 이곳에서 나이, 상황(소득, 재산 등), 관심사별 복지정보를 선별하여 클릭한 후에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 이용 동의’를 클릭하면 된다. 복지포는 신청한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관련 복지정보를 알려준다.

· 복지급여의 종류가 많기에 시민이 급여의 최신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진다.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것의 30%이하면 생계급여, 40%이하면 의료급여, 44%이하면 주거급여, 50%이하면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복지급여는 일 년에 한번 바뀌지만, 일부 복지급여는 중간에 새로 생기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지거나 급여액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시민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뀐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어서 좋다. 특히 기초연금과 같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급여도 상당히 변화되는 경우에는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2018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131만 원 이하이었지만, 2019년에는 137만 원 이하로 바뀐다. 어떤 노인이 2018년에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복지정보를 받고 2019년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보를 빨리 정확히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바란다.

2019년 2월 9일 이용교

차 례

머리말

[아동+청소년]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초·중·고교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저소득 아동의 주거복지가 확 바뀌었다

[대학생+청년]

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다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선점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대책

[직장인+중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건강보험 선택진료비가 사라졌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조정된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로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일자리를 찾자
기업과 정부, 근로자에게 20만 원 휴가비 준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짓는다

[여성+가족]

여성폭력 상담 29만 건, 대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노인]

기초연금, 2018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자녀 용돈보다 연금으로 생활한다
미수령 연금저축, '통합연금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진료비 증가, 대안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절반이 폐업했다구요?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활용하기

[저소득층 등]

위기가구는 '긴급복지'를 신청하자
겨울철 취약계층 60만 명을 발굴했다
저소득층 대책, 이렇게 활용하라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온누리 상품권, 설에 사용해보세요
비만은 질병,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렇게 설립된다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아동은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협의하면서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그리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프랑스는 1932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영국은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하였다. 아동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확인하여 본다.

▶한국인과 난민 아동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90%에 속하면 받을 수 있다.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는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은 아동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는 5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아동 1명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165만 원 이하일 때 아동수당은 10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1165만 원 초과~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은 5만 원이다.

▶소득인정액 하위 90% 이하만 받는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만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2018년 2월28일에 수당수당법을 제정할 때 야당의 요구로 하위 9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가구는 1436만 원 등이고 가구원이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아동만으로 구성된 가구에는 기준을 완화시켜 더 많은 아동이 수당을 받도록 했다. 즉,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에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고,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에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높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동 1명인 가구는 3인가구로, 아동 2명은 4인가구로, 아

동 3명은 5인가구로 확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아동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소득 인정액이란 해당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소득평가액은 세금을 내기 전 총소득에서 다자녀공제와 맞벌이공제를 한 금액으로 자녀가 많거나 맞벌이 가구이면 실제 소득보다 더 낮게 계산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더 많이 지출할 것이므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65만 원 공제액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월 64만8000원이라는 수치에서 나왔다.

맞벌이공제는 부부 모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연 12.48%)}이다. 지역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한다. 부채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하고 개인간의 빚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재산의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와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아동수당은 6월 20일부터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서 신청인과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필수제출(확인)서류는 아동수당만 신청하면 '아동수당신청서'이다.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신청'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카드,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고,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만약,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 통장사본,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난민은 난민인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는 일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바란다. 수급자격이 되어도 신청한 사람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8월까지의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 <http://www.ihappy.or.kr>

유아학비,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동 또는 3월부터 가정양육하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으로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바란다. 과거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중 선택할 수 있다

· 만5세 이하 모든 아동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이 받을 수 있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이하 아동이 받을 수 있으며,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이 신청하면 탈 수 있다.

·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혹은 보호자)가 신청하여 받는다. 보육료를 받는 아동은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포함)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3월에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한다.

▶‘유아학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3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닌다면 ‘보육료’를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원을 받는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닌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긴다면 ‘유아학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 아동이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기면 지원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이나 직장에서 PC로 혹은 핸드폰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 온라인신청을 시도하여 본다.

· 시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의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열면 상단에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청이 있다. 그중 ‘온라인신청’을 클릭하면, 보육료, 아동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보인다.

· 유치원에 다니거나 다닐 아동의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유아학비’를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온라인신청은 본인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알고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온라인신청에 동의함’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 아직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해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본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야 한다.

·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아학비는 만3~5세 아동만 받을 수 있지만, 만6세 아동도 ‘취학유예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다. 취학유예증명서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되고, 필요하면 팩스, 우편 혹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동이 만6세가 되면 대부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에 만5세 이하로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지나가면 된다.

▶신청자와 가족의 정보를 입력한다

·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나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후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전자우편+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진행상태)+서면(신청결과) 등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를 선택하고 임시저장을 한다. 이때 본인이 편리한 소통수단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된다.

· 가족구성원은 신청인과 관계(예, 배우자,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가족구성원과 함께 살 경우에 입력할 사항이 비교적 간단하다. 19세 이상의 가구원은 일반전화 혹은 휴대전화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추가된 가구원은 ‘실명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동안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발급신청-아니오’를 선택하고, 미신청사유에 ‘기발급자’를 선택한 후에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취소와 수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취소와 수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아동이 3세 혹은 4세가 되어 유치원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예정이어서 ‘유아학비’를 신청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면 ‘유아학비 신청취소’를 해야 한다. 신청취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수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한다.

·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7일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진행사항과 신청결과를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일주일도 지나도 결과를 받지 못하면 해당 이메일이나 문자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아학비의 지원내용은 만3~5세 아동에게 같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원받는 보육료와 가정에서 양육을 받는 아동이 받는 양육수당은 아동 연령에 따라 다른 것과 비교된다. 다만,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국·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이고, 사립유치원은 월 22만 원이다. 이 금액에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되고, 원차원에서 수행하는 특별활동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는 정액으로 특정 유치원이 더 많은 학비를 고지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학부모에게 원비로 요구할 수 있다. 유치원을 선택할 때에는 전체 원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본인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원비가 많고, 특별활동비 등도 많은 편이다. 유치원에 입학한다면 유아학비를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bokjiro.go.kr>

초·중·고교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혹은 보호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은 사·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60% 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는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급여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신청하여 선정되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 가구 중위소득은 매년 가구원수에 따라 증액된다. 2019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70만 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0032원, 4인 가구 461만3536원, 5인 가구 546만7040원이다. 그것의 50%인 교육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85만3054원, 2인 가구 145만3264원, 3인 가구 188만0016원, 4인 가구 230만6768원, 5인 가구 273만3520원 이하이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기에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올라간다.

·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는데, 현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이나 한부모가족 등이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급여의 액수는 초·중·고등학생별로 다르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등학생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각종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가 학생에게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추가로 초등학생은 2019년에 부교재비 13.2만원과 학용품비 7.1만원을 합친 20.3만 원을 받고,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 20.9만 원과 학용품비 8.1만 원을 합친 29만 원을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중학생은 연간 최대 283만 원을, 고등학생은 최대 462만 원까지 받고, 추가로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지원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하고, 이미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신청할 필요는 없다.

▲중위소득 60%이하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보다 높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무료이다. 이들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일부 시·도에서 급식비는 80%이하이다.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연간 받는 금액은 고교 학비(170만 원), 급식비(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 원), PC, 인터넷 통신비(23만 원) 등이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관은 거주지 시·군·구청이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수급자로 선정한다.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자에게 각종 증빙서류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요구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할 때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교육비만은 ‘교육비 원클릭’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해 잘 알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인도 교육급여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세대지원의 원칙’이기에 수급자 부모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모(성인)가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례’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대학교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이 제도는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용하므로 잘 활용하기 바란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 하기 바란다. 도움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의 부모(혹은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 수급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신청한 사람만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와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와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를 개통하였다. 교육부 등이 추진하는 교육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이 약 60개이다.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주는 경우가 많고, 알아야 신청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가 교육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한눈에’를 구축하였는데, 학부모, 학생, 성인학습자 등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교육복지와 지원을 받는 절차가 복잡했다

·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복지와 지원을 받는 절차가 여간 복잡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신청해야 할 학생과 학부모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줄 모르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지 여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는 잘 알지만, 학교장이 추천하는 고교학비지원은 핵심업무가 아니기에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학교장이 학생의 경제적 수준을 알기는 어렵고, 학년초에 담임교사가 학생의 가정사정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학년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고교학비지원사업은 신청시기를 놓치기 쉬웠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이 ‘교육지원 한눈에’의 구축이다.

▲‘교육지원 한눈에’는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 ‘교육지원 한눈에’는 학부모, 학생, 성인학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각종 교육복지와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구축하였다. 학부모와 학생 등은 각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면 ‘전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지원사업은 대상별로 알기 쉽게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전체로 구분되어 있다. 각종 지원사업이 학제별로 적용된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생에게, 교육급여는 주로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적용되기에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검색하면 되고,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사람은 ‘전체’로 검색하여 각 사업의 내용을 읽고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보는 것이 좋겠다.

▲가구 상황과 소득구간별로 달라진다

· 교육복지와 지원사업은 크게 가구상황과 소득구간별로 달라진다. 가구상황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탈북, 다자녀, 전체가 있다. 어떤 지원은 다문화가족에게만 적용되고, 어떤 사업은 탈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교육복지와 지원은 소득구간별로 세분되어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200% 이하로 세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적용되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60% 이하에게 적용된다. 대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고,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대학생까지 받을 수 있다.

· ‘교육지원 한눈에’는 특수교육 대상, 도서벽지, 지역인재, 기초학력 등에 따른 지원을 검색할 수 있다. 일부 사업은 인문계열, 예술계열, 이공계열, 직업계고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여 검색하고 보관한다

· ‘교육지원 한눈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점차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복지와 지원사업을 바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여 두면 맞춤형으로 지원 정보를 받고 신청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기에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대개 신청시기에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2019년 4인가구 기준 월 922만원 정도)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유아학비지원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 혹은 자녀가 학생인 사람은 ‘교육지원 한눈에’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60여 가지 사업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복지와 지원은 60여 가지이다. 그중 28개는 교육비, 등록금, 학업장려비 등 경제적 지원이고, 27개는 교육·체험·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31개 주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검색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 예컨대, ‘학업중단 숙려제’는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숙려기간 동안 상담,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기초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학생이 적지 않는데,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이 최소 1주일에서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 동안 숙려기간을 두고 의사결정을 돕는 사업이다.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은

담임교사 등과 상담을 한 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왜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지, 학업중단후 생활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 또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은 “대학생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선발되면 시급 9,500원을 받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 ‘교육지원 한눈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대부분이지만, 평생학습자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있다. 이 사이트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중심이고, 향후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급여도 추가될 것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복지급여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점에서 교육부가 ‘교육지원 한눈에’를 만들어서 교육복지와 지원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은 다른 부처에 귀감이 된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지만, 시민은 맞춤형 복지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민이 적기에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아서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

교육지원 한눈에 <http://eduone.moe.go.kr>

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인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방안을 살펴본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 정부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지향한다. 함께 살기 위해 일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 상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약자도 살맛나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 교육부는 우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사회정책 전략에 맞춰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 등 다양한 ‘선별적’ 교육복지가 있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을 통해 기회의 평등 보장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기회는 당사자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 점이 컸다. ·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농담이 있었다. 자녀 교육은 가족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이다.

· 국가가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출신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교육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아동이 차별없는 출발선에 서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완성시켜야 한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지만, 학교등록금 이외에 다양한 사교육비로 인한 차별은 줄지 않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특기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국가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공교육만으로 만족스럽게 살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공교육의 질적 성숙을 빨리 도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복지

· 출발선이 같더라도 지적 능력이 낮거나,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교하여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다문화·장애·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방과후활동비와 약간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 사회적 약자는 상황에 따라 이동권의 지원, 돌봄과 학습 도우미 등 특별한 도움이 더 필요하다. 학생은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각종 교육활동 경비, 교통비를 포함한 용돈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포용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창의성과 다양성 교육에 집중

· 교육부는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강조된다.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과 참여를 중시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 교육부는 학생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적 학습 생태계를 갖춰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키우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보다는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절실하다. 대학간 경쟁과 서열을 넘어서 네트워크와 협력이 절실하다. 우선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교육컨텐츠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성인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강화

· 그동안 한국의 교육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에 집중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무상의무로 받을 수 있어야 했다.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령기의 아동에게만 ‘취학통지서’를 보낸다. 학교장이 초·중학교를 마치지 않은 성인에게 취학통지서를 보내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 이에 정부는 모든 성인이 헌법상 보장된 초·중학교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부 초·중학교에 있는 성인반을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서 운영해야 한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듯이, 모든 초·중학교나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성인반을 둘 것을 제안한다.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평생교육

· 교육부는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20대 후반까지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만, 30대 이후에는 개인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다.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에 비교하여 성인기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평생학습에 참여할 시간이 적고, 평생학습기관과 프로그램 등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7%로 유럽연합 평균치인 45.1%에 크게 못 미친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평생학습체계를 꾸릴 예정이다.

· 성인이 대학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을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이하인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의 액수는 다르다.

·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초·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조기에 적용시키며, 성인도 국가장학금을 통해 평생학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 시행하면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빨리 구현할 수 있다.

교육부 <http://www.moe.go.kr>

저소득 아동의 주거복지가 확 바뀌었다

· 국토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2018년 3월에 공포하였다. 주거복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잘 활용하기 바란다.

▲보호아동이 퇴소하면 주거문제가 심각했다

·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살 때에는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급여도 받는다.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살던 아동이 18세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법적으로 퇴소하도록 되어 있다. 퇴소시에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데, 전세보증금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18세 이상이 되어도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하거나 질병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는 마칠 때까지 시설보호가 연장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이 보호기간을 연장받을 때에는 무상으로 살 수 있지만, 이들이 퇴소하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때에는 20세까지만 무상으로 살 수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보호아동 전세임대로 무상 혹은 50% 감면

· 이에 국토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군입대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때에는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때에는 20세까지만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차별을 철폐한 것이다.

· 또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을 받았던 아동이 성장하여 보호 종결을 받은 경우에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전담요원과 원장 등은 아동이 퇴소할 때 원가정 복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퇴소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임대료의 무상이나 50% 감면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세임대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는 아동 수는 2만9343명이고, 그해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독립된 주

거생활을 원하기에 담당 사회복지사 등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무상 혹은 50% 감면을 활용하기 바란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완화

· 토지구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400만 원으로 시중 시세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보증금만 낮을 뿐만 아니라 월 임대료도 시중 가격에 비교하여 1/3 수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구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을 선호한다. 400만 원의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옴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 국토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 집에서 사는 저소득 국민도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갖춘 집에서 살면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이다.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침실의 수를 확보하고, 실내화장실, 입식부엌 등을 갖춘 집을 말한다.

· 국토부는 2018년부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50만 원으로 완화시켰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집에서 사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보증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2019년 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속하므로 1인 가구는 85만3054원, 2인 가구는 145만3264원, 3인 가구는 188만0016원, 4인 가구는 230만6768원 이하이다.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때 보증금을 50만 원만 내고도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도 받는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증액되고, 서울, 경기와 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으로 차등하여 지급받는다. 정부가 정한 그해 주거급여의 액수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면 기준 만큼 지원을 받고, 기준보다 적은 임대료를 내면 실제 낸 임대료만큼 지원받는다.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 1인 가구는 월 23.3만원, 2인 가구는 26.7만원, 3인 가구는 31.6만원, 4인 가구는 3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많아지면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주거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의 44%도 높아지며, 주거급여의 액수도 증액된다.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노인에게는 자녀가 있고, 젊은이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낮으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도 받을 수 있다

·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7명 이하를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 등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교하여 정부의 지원이 낮았고, 근무하는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원이 턱없이 낮았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될 수 있는데, 어떤 양식의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 차별이 심해 매우 불합리했다.

· 특히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이중적인 차별을 받았다. 즉,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신고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국토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최근 바뀐 주거복지의 내용을 잘 알고, 해당 아동과 가족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하겠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 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19학년도 1학기에 대학교에 다닐 재학생은 무조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1072만원 이하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2018년 12월에는 2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성적이 좋아도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신청자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이 계산하기에 최상위 20%에 속하지 않는다면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대학생만 받는다

·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에 2018년 12월17일까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대학교 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번만이라도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은 신청 대상자가 아니고, 2018학년도 2학기에 12학점 미만을 이수한 사람도 장학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편)입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 신입생, 편입생과 재입학생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입생과 편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다.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없기에 누구든지 신청하고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은 입학 선물이므로 지금 신청한다. 아직 대학교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신청하면 향후 최종 대학교에 맞추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어떤 사람이 3월에 대학교에 (편)입학한다면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하면 해당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고지할 때 국가장학금만큼 공제한 후에 고지서를 낸다. 만약 등록금을 낸 후에 신청하면 몇 달 뒤에 국가장학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입생이나 편입생도 지금 신청하면 등록금 마련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등록금을 모두 내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장학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연간 520만원까지 받고, 다자녀가구는 많이 받는다

· 2018년에는 중위소득의 70%(소득인정액 316만 원)인 대학생도 520만 원을 받고, 90%(소득인정액 406만 원)인 대학생은 390만 원, 100%(소득인정액 451만 원)인 대학생은 368만

원, 120%(소득인정액 542만 원)인 대학생은 368만 원, 150%(소득인정액 677만 원)인 대학생은 120만 원, 200%(소득인정액 903만 원)인 대학생은 67만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0%를 넘긴 대학생도 대학별 자체기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이 장학금의 한도액보다 낮으면 장학금은 등록금만큼 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계층이 1-3구간인 대학생은 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8구간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주는 국가장학금은 첫째부터 모두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국립·공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최상위계층이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한민국의 최상위계층 약 20%에 속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고등학생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할 때,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관련 공적 기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보고 계산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자신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혼이면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다.

· 국가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동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인 증은 간단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학생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에 '학생 본인 은행 계좌번호'를 기록한다.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각 가구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는 한번 인증하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에 한번은 인증받아야 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또 거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마감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또한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1599-2000)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동의를 표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평점 8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은 학교만 잘 다니면 국가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다. 등록장애인은 최소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대학생은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이수하고 성적이 낮더라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대학교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마감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내도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해주므로 등록금 대출이 필요한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바란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시작했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24일 14시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15일 2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학자금 대출은 대상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가 있다. 그중 일반학자금 대출은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입학금과 수업료 등)과 생활비(학기당 150만 원까지)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평점70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이 폐지되었다. 정규 학기(8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학점 취득이 전혀 없어도 논문집필, 어학이수·봉사시간 등을 위해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마감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국가장학금과 연계되어 있다. 장학재단으로부터 받는 국가장학금으로 학교등록금을 해결하면 학자금 대출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 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쉽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했다. 대학생은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은 이자가 싸다

· 2018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2%이다. 소비자물가상승율이 2%를 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은 사실상 원금가치만 갚은 셈이다.

· 학자금 대출은 최장 10년 거치 10년 동안(합계 20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기간이 짧으면 매월 내는 원금이 많고, 거치와 상환기간이 길면 전체 원리금이 많으므로 잘 선택해야 한다.

▶ 고용위기 지역은 상환유예도 있다

· 교육부는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해줄 예정이다. 최근 조선업의 위기와 GM자동차공장의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해남군, 목포 등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특별상환유예지역에 사는 대학생은 대출을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상환유예는 상환기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지불능력이 있다면 빚을 빨리 갚는 것이 좋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도 있다. 현장지원센터는 서울, 경기(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춘천) 7곳에서 운영되고,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 광주센터는 전남대학교에 있고, 다른 센터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궁금하면 고객센터(1599-2000)에 전화하거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기 바란다.

▶ 학자금대출 상환시 지원도 있다

· 한국장학재단과 청년희망재단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신용유 의자로 등재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사업의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상환중인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장기연체자로서, 총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연체 30일 이하이며,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성실채무자이다.

· 지원방식은 상환비율(상환금액·약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3차례에 걸쳐 신청받아 지원한다. 장학재단은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고, 청년희망재단은 남아있는 채무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 약 400여 명에게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는데, 청년희망재단과 같은 민

간기관도 학자금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도 신청하라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입학생과 편입생은 성적 제한이 없고, 두 번째 학기부터 평점 80점 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70점 이상, 장애인은 성적제한이 없음)인 대학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어떤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의 대상인지 여부와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를 알기 어렵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학자금 대출은 빚이고 장학금은 값을 부담이 없기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모두 신청한 대학생에게만 준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http://www.kosaf.go.kr/ko/tuition.do>

청년은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20~30대 모든 청년은 무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40세 이상 모든 국민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20~30대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피보험자의 가족)는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30대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2019년부터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활용하기 바란다.

▶ 모든 청년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까지 20~30대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는 국민은 20~30대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20~30대는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20만 명(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제안하였다. 2018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즉,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20세와 30세에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20~30대 청년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즉,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는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시행한다.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자살은 20대 사망 원인 중 43.8%이고 30대는 사망 원인의 35.8%이었다. 정부는 청년의 정신건강을 조기에 살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 이는 40대 이후 국민이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기에 5대 암 검사를 무상 혹은 검사비의 10%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과 같다. 40세 이상은 남녀 구분없이 위암검사와 간암검사를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중·고소득층은 본인부담금 10%로 받고, 50세 이상은 대장암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여성은 20세 이상이면 자궁경부암검사를 무상으로 받고, 40세 이상은 유방암검사를 무상 혹은 10% 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에게 노인성 질환이 늘어났다

· 20~30대에게 국가건강검진을 확대한 것은 청년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은 경추질환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 공황장애 및 우울증,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과 장염 등 소화계 질환, 급성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등 많은 분야에서 건강이 전체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악화되었다.

· 과거에는 노화로 인한 질병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업과 취업 혹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늘었다. 청년은 노인성 질환인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환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졌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세대의 고단함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58.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이었다.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3년 4만7721명, 2017년 7만5602명 등이었다.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도 2013년 7913명에서 2017년 1만6041명으로 5년간 두 배로 늘었고,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359명에서 2017년 2만4106명 등으로 5년간 38.9% 증가했다. 이 수치는 당뇨 질환의 연령대별 평균 증가율 23.4%보다 훨씬 높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효과를 거둔다

· 모든 청년이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건강검진을 직접 받아야 한다. 현재도 20~30대 청년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노인 등 다른 연령층에 비교하여 낮다. 청년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모든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다른 보건복지 관련 법령도 개정되었다

· 2018년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주요 개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을 정비했다. 설립 요건만 갖추면 신고제를 통해 쉽게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제로 강화시킨 것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

된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지역사회자원 개발·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아동학대·인터넷 중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숙박시설·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렇게 하면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다

·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 광주 동구 용산동 등 전국 20개 단지에서 7818가구의 행복주택이 2018년 9월달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50%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행복주택을 청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000호 중 전국 20곳 7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9월에 한다. 올 3월과 6월에 각각 1만4000 가구와 1만 가구를 모집했고, 이번에 781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할 행복주택은 수도권 16곳(6251가구)과 지방 4곳(1567가구)이다. 서울에선 8개 단지이고, 그중 4개 단지는 강남권이다.

·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1401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다.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 112가구이다.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루체하임은 50가구,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자이 71가구 규모이다. 모두 입지 조건이 좋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다. 은평구 3곳(1002가구)과 양천구 1곳(499가구)에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에서도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 서울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6㎡(8평), 39㎡(12평), 49㎡(15평), 59㎡(18평) 등 소형이고 임차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39㎡(이하 전용면적) 보증금은 7440만~9920만 원, 월 임대료는 26만~35만 원이다.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는 20만 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

· 경기와 지방의 행복주택은 대부분 36㎡(11평) 이내이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16㎡(5평) 내외의 초소형 주택도 있다. 지방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같은 면적이라도 입주자에 따라 임대료는 다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시세의 60%로 가장 싸고, 대학생은 68%, 소득 있는 청년은 72%, 신혼부부는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청년·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2.7%의 낮은 이율로 조달할 수 있다.

· 입주 조건이 좋다 보니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2018년 3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이었다. 경쟁률이 높더라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뽑히기에 관

심있는 사람은 청약하기 바란다.

· 광주지역에선 동구 용산도시개발구역 내 대학생·청년(21㎡) 120호,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6㎡) 30호,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36㎡) 104호 등 264호를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다. 용산 지구는 제2순환도로 소태교차로와 용산교차로 사이에 있다. 지하철 1호선 소태역에서 1.7km 떨어진 위치로, 2019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유리하다

· 행복주택은 2017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3135가구 중 신혼부부에게 1442가구가 배정되고, 청년에게 996가구, 대학생에겐 120가구가 공급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배정 물량은 각각 493가구, 84가구이다.

· 청년은 미혼 무주택자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신청 직전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2017년의 3인 이하 가구 500만2590원, 4인~5인 가구 584만6903원, 6인가구 622만5원)이하이고, 개인은 그것의 80%(3인 이하 가구 400만2072원, 4~5인 가구 467만7522원, 6인 가구 497만4원)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2억1800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신혼부부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소득 기준은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2억4400만 원(자동차는 청년 기준과 동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외에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일부 물량이 공급된다.

·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3월부터는 순위제를 도입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주하면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6년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이다.

▶해당 주택공사에 청약하면 된다

· 조건을 갖춘 사람이 공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수 있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한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사람은 해당 공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지역)의 경우 9월 10~12일,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파주·성남)는 9월 5~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 양평·가평·파주·성남 외 지역)는 9월 12~1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입주는 2019년 1

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광주 용산 행복주택의 경우, 9월 18일 16시까지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시민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5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12월7일 최종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행복주택 추가 모집도 있다

· 국토부는 올 12월에 3000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모집하고,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하면, 행복주택에서 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선점할 수 있다

· 초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신혼부부가 주택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었지만,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우선 배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34개 지역에서 679호가 공급되고, 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본다.

▶매입임대주택이란

·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집이다. 이 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에게 우선 공급되고(1순위), 그 다음 순위로 소득 70% 이하자(2순위), 소득 100% 이하자(3순위)에게 제공되었다.

· 2018년에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하니 관심있는 사람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바란다.

▶주택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 매입임대주택은 흔히 주택가에 있기에 해당 주택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고층 아파트와 달리 승강기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세대구성원 중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경우가 있으면 피해야 한다.

·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도 있다. 분양으로 전환되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가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된다. 10년간 임대료 살다 분양을 받길 원하면 ‘분양으로 전환될 주택’을, 오랫동안 임대료 살려면 장기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의 자격과 순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

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 2018년에 신청하면,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의 소득을 합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2017년에 3인 이하 가구 350만1813원, 4인~5인 가구 409만2832원, 6인 가구 435만4004원 등)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태아도 포함), 혼인가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 한편, ‘행복주택’은 ‘매입임대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높다.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2억4400만원(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한다

·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이다. 그중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비수도권에서 141호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 무주택 신혼부부는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가 1주택을 신청해야 한다. 1세대가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된다. 신청은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세대원의 수를 셀 때에도 세대주, 그 배우자, 세대의 직계존·비속은 계산되지만, 함께 살더라도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등을 확인한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와 배점의 판단 기준일도 모집공고일이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정확히 신청하여 계약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신혼부부 주택은 계속 공급된다

· 국토교통부는 2018년내 새로 매입하여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서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에서도 우대를 받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클릭하기 바란다. 신혼부부가 잘 찾으면 저렴하고 편한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대책

· 매년 4000여 명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체계에서 나와 자립을 시도하는데, 그 중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으로 내몰린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사람은 2만695명이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은 전체의 24.4%인 5052명이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퇴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바꾸어야

·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18세가 되면 보호체계에서 벗어나서 ‘자립하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한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18세가 되면 바로 퇴소시켜야 한다. 합법적으로 퇴소를 늦출 수 있는 주요 사유는 학교 재학, 직업훈련, 병원에 입원이다.

· 우리 사회에서 18세가 되면 실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에서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한다는 기준은 1961년에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아동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만 마치고도 일을 시작했다.

· 현재 18세의 80%가량은 대학생이고, 이들이 부모로부터 자립한 경우는 거의 없다. 유독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한 사람에게만 18세에 자립하도록 한 정책은 바뀐 생애주기에 맞지 않다. 18세인 미성년자에게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자립하도록 하는 정책은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가진다’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19세 성년이 된 후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시켜야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아동은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퇴소하고, 취학, 직업훈련, 병원입원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하면 곧 퇴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하면 바로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취업을 하더라도 부모 집에서 살고, 직장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전셋집이나 월세방을 얻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취업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 만 18세에 도달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벗어나 독립한 청(소)년 4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은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립’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된 사람의 88.5%가 시설퇴소 후 6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었다는 것은 퇴소 때 받은 자립정착금 등이 고갈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 된다는 뜻이다.

·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바로 퇴소를 시키지 말고, 취업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 안정된 주거마련, 보호자의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퇴소 후 1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례가 많은 특정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임직 원 교육과 코칭 등으로 자립지도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

▶대학진학을 통한 자립능력을 키워야

·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은 한때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퇴소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취업이 쉬운 실업고(현 특성화고)에 우선 취학도록 권장하였다.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특례입학’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수급자 인 대학생은 4년간 평점 C학점 이상이면 연간 52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립대학교는 대부분 등록금이 500만 원 미만이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비록 취업하지 않아도 국가는 월 90만 3600원(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8시간×15일)을 버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실직 중이라도 돈을 버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대학생은 월 근로소득 중 4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소득도 3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어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월 70만 원을 번다면 4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0만 원의 30%인 9만 원을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은 21만 원이다. 그 돈조차도 책값, 학원비, 학교등록금 등 교육비로 쓴 것을 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교 특례입학,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의 특례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직업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자립대책이다.

▶퇴소자의 주거대책을 세워야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수입은 적고 주거비 등 지출은 늘기 때문이다.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은 월 150만 원 내외를 버는데, 월세·관리비 등 주거비를 내고, 음식물비·교통비·통신비·잡비 등 생활비를 지출하면 저축할 돈이 없다.

· 아동양육시설에서 살면 주거비가 없고, 무상교육을 받으며, 아프면 무료로 치료를 받지만, 시설에서 퇴소한 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높은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이들이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다.

· 과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단독가구’라는 이유로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어려

왔는데,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의 일정 수량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수량이 적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주택’을 늘리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혹은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설 퇴소 청(소)년이 일정한 기간은 공공주택이나 자립주택 등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꾸어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했던 청(소)년이 퇴소 직후 1/4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된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퇴소 직후 기초생활보장의 모든 급여를 중단하기보다는 ‘주거급여 특례’로 지정하고, 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 연간 2500만 원 내외, 10년이면 2억5000만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된 인력이 퇴소후 6개월만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립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https://www.kohi.or.kr>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4월 30일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장려금 사전예약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이고 누가 얼마나 받는 지를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제도이다. 공공부조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가난한 사람을 고른 후 생계급여 등을 현금으로 주거나 의료급여 등을 현물로 준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일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급여액이 줄기에 수급자는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난다. 이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된다.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올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직장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비과세업자, 농업인, 어업인은 제외되지만 면세사업자는 해당)는 모두 해당된다.

· 첫째,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요건이 된다.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둘째,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고, 유형별로 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결혼한 배우자가 없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세대이다. 미혼(부)모가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홀로 키우는 독거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홑벌이가구는 남편 혹은 아내가 혼자 버는 경우이고,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이다.

· 2019년에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근로+사업+이자+기타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

· 2. 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150만 원이고,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이면 최대지급액은 260만 원이며, 맞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이면 최대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연간 소득액이 낮으면 최대지급액을 받고, 연간 소득액이 높아지면 최대지급액보다 조금 낮아진다.

· 셋째, 가구원 모두의 합계 재산(집+땅+전세금+저축성보험+자동차 등)이 2억 원 미만일 때 받는다.

▶자녀장려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흔히 근로장려금과 연계해서 설명하기에 둘을 한 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개이다. 장려금 지급기준을 잘 살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도 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신청자의 연령제한이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합계 재산이 2억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PC와 핸드폰 등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PC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신청하고, 모바일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당초 5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4월23일부터 사전 예약신청을 받고 있다. 위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장려금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자신이 수급자격자인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고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 사전 예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5월 이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0%를 받고, 이후에 11월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가급적 사전 신청하고, 5월에는 장려금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

· 세금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으로 홈택스 모바일 앱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할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회원가입은 한번 해두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기록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이용한다.

· 국세청이 법정기간 전에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으로 신청 기간을 늘린 셈이다. 5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액수가 10% 감액되기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세청 상담센터(전화 126번)에 전화하기 바란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와 자영자가 국세청(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장

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탈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료는 내리고, 일부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오른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고, 연 소득 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추가로 내게 된다.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4만 7000원 인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 가량이 영향을 받는데,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본다.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를 낸다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주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재산, 승용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심지어 소득액이 낮은 경우에는 가족수에도 부과하였다.

· 이러한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예,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있어도 고액이 아니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능력이 없는 가족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부과체계의 개편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도록 한다.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이른바 ‘평가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수용되었다.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이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한다. 특히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100원 만 내면 된다.

· 또한, 지역가입자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줄였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

게 되면 349만 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 가격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았던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낮아진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인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보험료가 월 9만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593만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는 7만 원으로 낮아진다.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 월급이 7810만 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000여 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월급 외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낸다. 그동안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만 부과되었지만, 7월부터 연간 3400만 원,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뀐다. 고소득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 명(전체 직장가입자 0.3%)에서 7월부터 13만 명(1.0%)으로 늘어난다.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 상한액을 월 243만7000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고, 매년 조금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급 7810만 원 이상인 직장인 4000여 명의 보험료도 오른다.

· 한편, 소득,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 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능력이 있는 ‘무임승차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2만 세대(36만명)가 지역가

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전체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13%)는 비록 부모여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000원(시가 약 11억 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도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 다만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 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18년 7월부터 1단계, 2022년 7월에 2단계로 개편된다. 점차 최저보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인다. ·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50조4168억 원이고, 징수 금액은 50조1496억 원(징수율 99.5%)이었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이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급여를 좀 더 받는다. 바뀐 건강보험을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하기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건강보험 선택진료비가 사라졌다

·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동안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선택진료비 때문에 부담이 컸다. 대학병원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선택진료를 강요받았다. 해당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으려면 ‘선택진료 동의서’에 서명해야 진료를 받았다. 선택진료비가 사실상 폐지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선택진료비 제도, 어떻게 운영됐는가?

·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이른바 ‘3대 비급여’라는 것이 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었다.

· 환자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이 선택진료비였다. 상급병실료는 병실을 6인 이상을 쓰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1인실이나 2인실 등 ‘상급’병실을 쓰면 6인실 요금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1인실이나 2인실 병실을 쓰는 환자가 병실료를 좀 더 내는 것은 합리적이다.

· 하지만, 선택진료비는 “환자나 가족이 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병원에 의해 의사의 지정을 받는 상황에서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내는 것은 불합리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의를 선택한다면 그만큼 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도입되었다. 선택진료비는 ‘수술’과 같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진찰부터 입원, 마취, 검사 등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에 포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의사를 의료기관장이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면허 15년 이상인 치과 의사와 한의사,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인 의사, 전문의 경력 5년 이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이 해당되었다. 의료법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지정은 진료과목별 75% 이하로 제한되었다.

· 그런데, 한번 의사가 되면 평생 일하는 의사에게 ‘15년 이상’은 흔한 경력이고, ‘전문의 경력 5년 이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은 일상적인 기준이었다.

▶선택진료비는 병원 운영의 방편이었다

·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큰 병에 걸리면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큰 병원에 가면 ‘선택진료’를 통해 예약하도록 되어 있기에 선택진료비를 피할 수 없었다. 선택진료비가 도입된 배경은 사립대 의과대학 교수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들에 대한 보상의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름도 1962년에는 ‘특진’이었고, 1991년부터는 의사를 지정

해서 진료를 받는다는 뜻으로 ‘지정진료’로 바뀌고, 2000년 이후부터는 ‘선택진료’로 변경되었다.

· 선택진료비도 항목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20~100% 범위 내에서 해당 병원장이 결정할 수 있었다. 예컨대, 어떤 수술이 건강보험수가로 100만 원이면 ‘선택진료비’는 50%가 많은 150만 원이 된다. 만약,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가로 수술을 받으면 100만 원의 20%인 20만원만 내지만, 선택진료를 받으면 20만 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15~50%만 가산하도록 하향 조정되었고, 선택의사 지정 비율도 진료과목별 33.4%로 줄이며, 2017년에는 선택진료비의 5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 병원 입장에서 선택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났다. 의사도 선택진료를 많이 해야 인센티브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이른바 비의료인이 의사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병원’은 선택진료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만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선택진료비가 사라지면 병원 운영은?

· 환자와 가족은 질병치료와 병원비만 걱정하면 되겠지만, 선택진료비가 사라지면 병원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어도 병원운영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직접 받는 본인부담금은 일부 줄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은 조금 늘어서 전체 수지는 유지될 것이다.

· 2013년의 경우 선택진료비 규모가 1조6000억 원이었다. 이후 정부는 선택진료비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했고, 2016년에는 병원별로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1/3로 줄였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켰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저평가된 370여개 항목의 수가를 5~30% 인상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를 700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입원료도 종별로 1.5~7.5% 올렸다. 그동안 선택진료비로 큰 혜택을 본 대학병원 등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진료비의 폐지는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었다.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몰릴 것인가?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환자는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저렴해진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큰 병이 걸리던지 작은 병이 걸리던지 건강염려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진료과목의 유명 의사가 있는 대형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쏠림현상 등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선택진료폐지는 의료기관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여주고, 의료서비스질은 높이는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

· 장기적으로 볼 때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민 생활양식은 음식 점조차도 ‘맛집’을 찾는 경향이 있기에, 내 몸의 건강을 위해 큰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줄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환자는 같은 진료행위라도 의원에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대학병원)으로 갈수록 ‘진료수가’가 인상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하고, 검사를 받은 후에 진찰 등을 받는 과정에서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과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아프면 그 수준에 맞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조정된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2013년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그 가족은 진료비의 일정한 비율만 지불하고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때는 이용자가 의원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40%, 50%를 부담하며, 입원은 요양취급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20%를 부담한다.

· 전체 진료비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않는 것이 있는데, 진료를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급여만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일정한 비율이 처리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진료를 꺼리거나 진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국가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시행한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소득분위별로 다르다

· 본인부담금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다.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낮은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 원만 넘으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되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본인부담금상한액이 높아진다.

· 2013년에는 3단계로 소득 5분위 이하는 본인부담금상한액이 200만 원, 6-8분위는 300만 원, 9-10분위는 400만 원이었다. 2014년에는 7단계로 세분되어서 1분위 120만 원, 2-3분위 150만 원, 4-5분위 200만 원, 6-7분위 250만 원으로 낮추고, 8분위 300만 원, 9분위 400만 원, 10분위 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후 전년도 소비자물가수준 상승률만큼 증액되었다.

· 2018년부터는 소득 하위 50%는 본인부담금상한액을 크게 낮추고, 상위 50%는 물가수준 상승률만큼만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본인부담금상한액이 80만 원으로, 2~3분위는 100만 원, 4~5분위는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하위 50%의 본인부담금은 대폭 낮아지지만, 상위 50%의 부담은 거의 늘지 않는다. 2017년 기준(6-7분위 256만 원, 8분위 308만 원, 9분위 411만 원, 10분위 514만 원)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상한제, 건강보험 보장성 높인다

·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하여 소득이 높은 사람도 연간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가 514만 원을 넘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금상한액이 인하되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되기에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다.

· 본인부담금상한제를 2017년에 비교하여 하위 50%는 대폭 인하한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고소득층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이상이기에 고액의 진료를 망설이게 된다. 2017년의 경우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의 비율은 19.8%이었다. 고액 진료비를 내야 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항목이 적지 않고, 간병비, 치료를 받느라 돈을 벌지 못한 것 등을 고려하면 부담은 크게 늘어나기에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조정으로 소득하위 50%는 연간 40~50만 원의 의료비가 줄고, 한 해 동안 약 3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지급 방법과 절차는?

·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시행된다. 사전급여는 병원 등 요양취급기관이 환자의 연간 진료비 총액을 쉽게 알 때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어떤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어떤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해서 그 입원비가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는 뜻이다.

· 환자가 여러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 그 환자가 얼마만큼의 본인부담금을 냈는지를 알 수 없기에 사후환급을 활용한다. 사후환급은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지급된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개인별 연평균보험료)와 관련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다음연도 4월에 정산된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 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개인별로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고,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급한다. 사후환급은 소득분위별로 환급금액을 확정해야 하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본인부담금상한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도입해야

·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건강보험에만 적용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노인환자가 요양병원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제한없이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 요양병원은 연간 진료비가 소득분위에 따라 80만원에서 514만원을 넘으면 모두 보험처리되지만, 요양시설은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전혀 없어서 본인부담금이 훨씬 많다. 더욱이 요양병원에서 식비는 건강보험수가에 포함되지만, 요양시설에서 식비와 간식비는 요양보험수가에 포

함되지 않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노인이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입원이 불필요한 노인조차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인이 의원급 외래 진료 받을 때 본인부담 낮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완화시켰다. 2018년부터 노인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이 1500원을 내고, 1만5000원 초과에서 2만 원 이하는 진료비의 10%, 2만 원 초과에서 2만5000원 이하는 진료비의 20%, 그리고 2만5000원 초과는 30%를 낸다. 과거 진료비가 낮을 때에는 1만5000원이 기준이 되었지만, 조금만 많아도 본인부담금이 4500원 이상이었던 것을 조정했다. 이러한 조정은 노인환자의 부담을 줄여 가까운 의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노인외래진료비 경감제도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자문위원회(연금위)가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현 상태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5년전 예측된 2060년 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소진될 것이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 기금은 40년 후에는 고갈될 수 있으니 연금위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고, 당연 가입기간을 확대하며,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하였다. 필자는 연금위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귀하가 국민연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빨라지는 이유

· 국민연금은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는 돈을 내는 사람이 많기에 기금이 쌓이지만, 태어나는 사람은 줄고 노인이 늘어나면 연금을 타는 사람이 많아 기금은 점차 줄어든다.

· 연금위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차 줄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연금을 타는 사람은 많아지기에 기금이 5년 전에 예측한 것보다 3년 빨리 소진된다고 본다. 연금위는 현재대로 두면 젊은 사람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매우 커지기에 짐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고, 가입기간을 늘리며, 노령연금을 타는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세대에게 득이 된다.

▶보험료율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

· 2018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9%이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17%,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금위는 현재 연금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13.5%로 올려야 한다고 본다.

·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보험료율은 3%이었고, 5년 후에 6%, 다시 5년 후에 9%이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1년간 보험료율은 9%로 바뀌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은 14%에서 매년 인상되어 현재 17%이고 곧 18%까지 오른다.

· 연금위는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추는 것을 중지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험료율을 2019년에 11%로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하자는 것이다.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연금도 더 받자는 제안이다.

·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50만 원을 내고 급여로 100만 원을 탈 정도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이 방식은 가입자 수가 적고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적을 때에는 가능했지만, 가입자 수가 많고 연금 수급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입과 지출에 균형인

국민연금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현재 소득의 9%만 내도 한 달이고, 미래에 13.5%를 내도 한 달이라면 가급적 보험료율이 낮을 때 내는 것이 좋다.

▶당연가입기간을 65세로 연장한다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가입 대상자이고, 학생, 군인, 주부, 취직준비자 등은 임의가입 대상자이다.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직장인이 아니면 27세까지 당연가입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첫 직장에 취직할 때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의 첫 가입의 평균연령은 26세이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타게 설계되어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60세에 도달하면 당연 가입은 중지되고, 본인이 희망하면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다.

· 60세로 정해졌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노령연금 개시일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된다. 연금위는 수급연령이 늦추어진 것만큼 가입연령을 연장시키면 연금액 수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 현재도 본인이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당연 가입기간을 늘려서 모든 가입자의 실제 연금액을 늘리려는 것이 제안 취지이다. 이를 제도화시키려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소득을 버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부득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보험료를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연금개시 연령을 67세로 연기한다

·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될 때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급하고, 2013년부터 61세로 바뀌고 매 5년마다 개시 연령이 한 살씩 늦추어진다. 개정안은 2033년 65세에서 2043년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자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도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일본은 현재 노령연금을 65세부터 주는데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연금개시 연령이 늦추어져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타는 액수도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받는데 평균수명이 늘기 때문이다. 최근 20년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3년에 한 살씩 늘었다. 연금개시 연령을 5년에 한 살씩 늦추어도 평균적으로 노령연금을 타는 기간은 늘어난다. 이 사안은 평균수명의 추이를 살피면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연금을 이익이 되게 활용하는 방법

·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가입 기간은 연장되며,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늦추어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연금위의 제안에 대해 사회적 반발이 심하면 정부는 3가지 방법 중 일부만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료율 인상을 늦추는 것은 현세대의 만족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어떤 보험보다 수익률이 좋은 제도이다. 따라서 18세가 되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일단 가입하면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혹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사람은 '추후납부'로 밀린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당연가입자는 소득에 의해 결정되지만,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하여 내면 된다.

·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이익이다. 늙고 병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을 때에는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다. 국민연금은 가장 알찬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 2018년 1월25일부터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었지만, 10년으로 2배나 길어진 것이다. 반환일시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익이다

· 국민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1988년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5년에 농어민, 1999년에 도시자영인에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흔히 학생, 취업준비자, 군인, 주부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때

·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이다. 가입자가 생존하면 노령연금을 받고,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장애·유족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등이다.

· 그런데, 반환일시금은 흔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타는 것보다는 그 액수가 적고,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연금을 타는 것이 이익이기에 가급적 연금을 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1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탄다

· 국민연금의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경우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근로자, 1995년에 농어민, 1999년에 도시자영업인은 5년만 가입해도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 현재는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등을 탈 수 있는데,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이 60세에서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65세 이내에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채울 수 있다면 60세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만약, 젊은 시절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고,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납부’를 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60세가 지난 후에는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등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으니 그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등을 하기 바란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대상자이거나 임의가입 대상자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했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과거에는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 1년간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반환일시금을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적 상실이나 국외로 이주 등으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지만, 학업(유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몇 년간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적 연금의 가입자가 되었을 때

·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타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간에 연계제도가 있어서 노후에 복수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하고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에 15년을 가입했다면 노후에 국민연금(8년분)과 공무원연금(15년분)을 함께 탈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소멸시효가 5년이었지만, 2018년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지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직접 혹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6년 20만7751명, 2017년 9월 현재 16만804명 등이다.

· 만약,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10년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 원으로 1인당 88만 원 꼴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는 거주불명이 32%이고, 소재불명이 14%로 연락조차 취할 수 없는 경우이었다.

· 요약하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보다 노령연금 등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받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이왕이면 연금을 받고, 반환일시금은 10년 안에 청구한다.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로또’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로또’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60세가 되기 전(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에 그 돈에 이자를 계산하여 공단에 반납하면 거의 ‘로또’를 타는 것과 같다.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물더라도 반납하면 노령연금 등을 탈 수 있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훨씬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에 큰 이익이다. 반환일시금의 반납에 대해 알아본다.

▶반환일시금은 푼돈이다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3년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다.

· 과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노후에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을 넘으면 연금으로 탈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청구, 사자(심부름)에 의한 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 등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노령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기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은 큰 이익이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이 늘었다

· 국민연금기금이 3년 일찍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이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7만1955명이었다. 반납신청자는 2016년에 13만1400명, 2017년에 12만1313명, 2018년에는 11만 명 가량 될 것이다.

▶반납신청자는 여성이 더 많다

· 2018년 반납신청자는 남성 3만3,176명, 여성 3만8,779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남성이 많지만, 반납신청자는 여성이 많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6년가량 더 길기에 그 만큼 노령연금을 더 탈 수 있다. 기혼자라면 아내가 남편보다 2-3살 젊은 경우가 많기에 남편이 사망한 후에 10여년 간 혼자 살기 쉽다. 남편이 없는 시점에 아내에게 연금만큼 좋은 노후대책이 없다.

· 반납신청자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반납신청자 중 50대는 4만28명, 60대는 1만8653명이었으며, 40대는 1만3197명, 30대는 77명이었다. 50대와 60대는 반납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탈 수 있기에 탁월한 선택이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로또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추납,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반납,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이 그것이다.

· 그중 가입자에게 가장 이익이 된 것이 반납제도이다. 이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장치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보험료가 소득의 3%이었고, 5년후 6%로 인상되었으며, 다시 5년후 9%로 인상되었다.

·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때의 조건으로 연금을 되살려준다. 1988년에 가입하여 5년간 낸 사람은 보험료 3%만 내고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의 70%를 보장받는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에서 10년 후에는 60%로 낮추어졌고, 2018년 45%이며 2028년에는 40%로 낮추어진다. 따라서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은 보험료를 조금만 내고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당시 조건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어 '로또'와 같다.

▶일시금보다 연금을 타는 방법

·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2011년 13만6628명에서 2015년 17만9937명, 2016년 20만7751명, 2017년에는 20만1278명으로 증가했다. 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10년 미만동안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다, 소수이지만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다.

· 60세에 도달하는 사람이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 65세까지 가입하면 10년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을 타는 것이 큰 이익이다. 일시금은 펀돈이지만 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이다. 또한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내면(추후납부)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

· 만 18세 주민의 국민연금 첫 달 가입비를 내고,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모든 국민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생선물’로 줄 것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이익이다.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

· 한국에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 가사업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가족 이외에 고용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최근 평균 증가율이 7.4%이었는데, 시간급 1만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9.0%포인트를 더 올렸다. 정부는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의 임금의 일부(인상분 9.0%의 절반까지)를 지원해주고 있다.

·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여 월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길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최근 18개월 중 6개월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면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인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2017년 보다 7632원 증가한 5만4216원이고 상한액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했어야 하는 노동자도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업보험료는 월급의 1.3% (사업주 0.65% 부담, 근로자 0.65% 부담)를 내는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하루 6만 원으로 평균임금이 36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불합리하다. 임금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018년 7월부터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앞두면 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급여)를 90일(다태아는 120일)동안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0만 원 오른 160만 원이다. 출산급여의 액수와 부담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개 300인 미만 사업장)과 대규모기업으로 나뉜다. 우선지원대상은 30일과 6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내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부담한다. 대규모기업은 30일과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90일은 고용보험에서 160만 원을 부담한다.

· 소상공인의 사업장일수록 여성노동자가 많고, 같은 직장이라도 여성노동자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여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여성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휴가를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남녀 노동자 모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신청을 꺼려했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차별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 2017년 민간부문의 육아휴직자는 9만12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13.4%로 2016년의 8.5%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1만2043명으로 2016년 7616명에 비교하여 58.1% 증가했다. 자녀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점차 확산되었다.

· 육아휴직은 1년간 쓸 수 있는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몇 달간만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40%이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첫 3개월은 150만 원, 이후 9개월은 100만 원이다. 육아휴직급여도 임금이 높은 사람은 한도액 때문에 다소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양육과 관련된 생애 각 단계에 걸친 지원 정책을 재편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출산휴가가 보편화되고, 육아휴직을 쓰는 노동자도 늘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에 미가입자는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

로 이뤄진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일반 재정으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가급여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정부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출산·양육과 관련해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을 강화할 작정이다.

▶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

·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과거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0.5%이었지만 현재 0.65%로 인상되었다. 사용자는 여기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 관련 보험료를 추가로 내기에 그 부담은 더 커진다.

· 보험료로 낸 돈의 대부분은 노동자가 실업급여, 출산전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받고 사용자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 등에 참여하여 되돌려 받는다. 설사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되는 것이다.

· 2017년 연말 기준 고용보험 기금 누적액은 약 5조원이지만 급여가 확대되면 기금이 축소될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급여의 파악한 후에 필요하면 보험료율의 인상 등을 검토할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큰 이익이고, 사용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고려할 때 가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보험료의 부담이 늘지만, 지원도 받을 수 있기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일자리를 찾자

졸업을 앞둔 대학생과 일부 고등학생은 취업에 관심이 많다. 대학교 졸업식의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취업난과 연관된다. 취업 여부는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낮은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 기업도 인건비를 걱정하여 신규 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고용노동청이 지역 청년 취업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잘 활용하기 바란다.

▶청년취업 성공 매칭데이

· 광주고용노동청은 2018년 11월1일에 청년 구직자와 기업 채용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청년취업 성공 매칭데이’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다. 참여업체는 제과제빵 회사인 호남샤니와 자동차 부품회사 금호HT 등 10개 기업에서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직종은 마케팅·기획사무원, 광고디자이너, 작가, 공장 전기관리원, 직업상담사, 자동차 부품 조립원, 기계·금속 제도사 등이다.

· 청년 구직자들은 미리 작성해온 이력서를 희망 기업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1대1 면접과 채용이 이뤄진다. 이 행사는 광주고용노동청이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인 모집 직종·자격 요건·근로 조건 등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개 구인업체의 채용정보

· 구인기관이 제공한 정보는 기업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모집직종, 모집인원, 근무지, 직무내용, 학력, 지원자격, 제출서류, 급여, 근무형태 등이다.

· 선일하이텍은 광산구 용동에 있는 건설업체인데 종사자는 3명이고 기계·금속제도사(캐드원) 1명을 모집한다. 직무는 CAD업무(설계 및 사무)이고, 학력은 무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고, 급여는 월 200만 원이다.

· (주)톡톡교육개발연구원은 서구 치평동에 있는 교육지원서비스업체이다. 전체근로자는 10명이고 교육훈련사무원 1명을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이러닝교육훈련·행정담당이며, 학력은 상관 없지만 직업훈련관련 직무경력 5년 이상으로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급여는 월 300만 원이다.

· 샤프터사회적협동조합 광주지사는 북구 북동에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직원은 5명인데 직업상담사 1명을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운영 및 전반적인 행정업무이고, 지원 자격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고 급여는 월 190만

원에서 213만 원까지이다.

· (주)하이모는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용·가발업이고 직원은 18명이다. 스타일리스트 3명을 모집하는데 직무는 미용·가발컷이다. 또한, 관리사무직 1명을 모집하는데 직무는 지점 및 직원관리, 매출관리, 마케팅, 보고서작성 등 관리사무이다. 스타일리스트는 경력 1년이고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하면 급여는 연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이다. 관리사무직은 대졸자로서 경력 2년과 자동차 1종 보통면허증이 필수이다. 채용되면 연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이다.

· (주)스카우트는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비스업체이다. 직원수는 481명인데 직업상담사 1명을 모집한다. 고졸이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하면 월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주)달빛 컴퍼니는 광고디자이너 1명을 월 170만 원에, 더국제직업전문학교는 직업상담사 1명을 월 160만 원에, (주)금호 HT는 자동차부품조립원 2명을 월 190만 원에서 250만 원에, 파인애플은 작가(광고멘트 등) 1명을 월 160만 원에, (주)호남샤니는 공장전기관리원 1명을 시급 7530원에 채용한다.

▶ 구인자는 업종, 직무, 급여 등을 살펴야

·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은 워크넷에서 다양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구인업체는 대부분 학력은 무관이라고 표기하지만,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전문자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격은 대학교 혹은 그 이상을 졸업하고 관련 국가시험을 보아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느 정도 학력은 기본적인 요건이다.

· 구인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면 지원할 업체를 몇 개로 압축한 후에 근무지, 근로자수, 직무내용, 급여, 근로형태 등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급여가 조금 높아도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비의 부담도 적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 구인업체가 근로형태를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표기하지만, 현실은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정보를 잘 탐색해야 한다. 예컨대,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교하여 근무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이 학교를 마친 후에 오고 저녁식사를 먹기에 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업종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청년마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들의 스터디룸, 진로상담 등 취업준비 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중 ‘나에게 맞는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청년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18~34세 청년은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청년 소모임 및 스터디룸 공간 제공, 노트북 활용 정보검색, 진로상담 및 취업특강 연계, 청년지원정책 안내 등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에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 복지상담, 신용회복상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다. 과거에는 취업상담이나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복지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 있었으나, 2013년에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에 100여 개가 있고 향후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모든 시민은 인터넷으로 워크넷을 검색하거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바란다. 일자리를 검색할 때에는 자신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하기에 적당한 인접지역까지 검색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go.kr/gwangju>

기업과 정부, 근로자에게 20만 원 휴가비 준다

·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에게 연간 20만 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기획되었다. 해당 중소기업이 4월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여 근로자 2만 명에게 2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는 이 사업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추가 적립하여 근로자가 국내여행으로 4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를 본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2014년에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되었는데, 참여 근로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1.0회, 2.1일 더 여행을 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업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에 균형을 갖고 여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은 2069시간으로 세계 2위이고, 삶의 질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26위이었다. 한국인은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높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요인으로 직장내 분위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한국인이 국내여행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가시간 부족과 경제적 여유부족이라고 말했다.

· 이에 정부는 15세 이상 국민 한 사람이 숙박여행으로 연간 39만1874원을 쓴다는 통계(국민여행실태조사, 2016년)에 근거하여 연간 40만 원을 국내여행비로 쓰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기획하였다. 근로자가 ‘쉽표가 있는 삶’을 위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여 내수경제를 키우려는 것이다.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 사업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지원을 위해 10만 원을 지원하고,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여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2018년 4월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접수한다. 4월 27일까지 자격심사와 확정을 지은 후에 5월1일까지 신청안내와 분담금 입금을 한다.

· 기업이 신청할 때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 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를 이미지 또는 PDF파일로 준비하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첨부서류는 최신 것이어야 한다.

·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선정 후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는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다음 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금년도에 참여한 기업은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이렇게 선정된다

·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모두 혹은 일부에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50명을 고용한 기업은 모두 혹은 20명만 참가시켜도 된다.

· 기업은 선정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분담금을 적립해야 한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단위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신청인원수×30만 원을 기한 내에 일괄 입금하면 된다.

· 신청한 참여 인원이 2만 명을 넘으면 2014년에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기업 규모별과 참여율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한국관광공사는 4월11일 기준으로 신청한 기업은 1211개소이고 인원은 1만5443명이라고 밝혔다. 매일 평균 1200명이 접수되기에 지원 대상 규모인 2만 명을 넘길 것이다.

· 총 신청인원이 지원규모를 넘기면 전체 중소기업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율(신청인원/상시근로자수)이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근로자 재직비율은 중기업 35%, 소기업 35%, 소상공인 30%이다. 선정 후 참여인원이 신청인원의 80%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 기업과 인원수를 확대할 것이다.

▶선정된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선정된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기는 사업이다.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온라인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몰은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고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 근로자는 2019년 2월말까지 횡수나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총액이 40만 원 이상이면 포인트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사용기간을 넘긴 후에 이월되지는 않는다. 사업 종료후 본인이 환부를 원하면 적립 포인트 중 정부분담비율을 제외한 금액만 환부할 수 있다. 예컨대, 4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이 남았다면 정부분담비율(25%)을 뺀 7만5000원을 환부받는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누리는 혜택은

·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한 여행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 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이란 인증서를 받고,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제’ 심사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은 언론홍보, 정부포상, 현판수여,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근로자는 직장에서 휴가비를 지원받고 마음 편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사협약에 의해 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직장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누리기 어려운 환경을 탈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근로자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동반자를 자유롭게 설계하여 국내 여행을 누릴 수 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여행이 활성화되면 관광업 등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될 것이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끼게 하고, 삶을 관조하게 하므로 행복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여자는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고 관련 산업도 발전되길 기대한다. 여행은 삶을 즐겁게 한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http://vacation.visitkorea.or.kr>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는 내용이 담긴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자들의 위험관리를 돕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 더 쉬워진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한 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원리는 “돈이 돈을 번다”이다. 자본을 투자하면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을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저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 원리금이 커지는 것과 같다. 저축한 돈에 이자가 생기는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출 이자를 내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빛이 빛을 키운다”는 말과 같다.

· 가계대출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혹은 기관은 가급적 돈을 제 때에 받아야 예측 가능하게 굴릴 수 있다.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않아 연체되면 높은 이자의 ‘연체수수료’를 물린다.

· 또한,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갚아도 벌칙 성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린다. 빌린 돈을 제 때에 갚지 않아 ‘연체이자’를 물렸지만, 일찍 갚으면 상금을 주지 않고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고객이 일찍 빛을 갚으면 ‘이자’를 벌 기회를 손해보았기에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늦게 갚아도 일찍 갚아도 손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도 대출을 일찍 갚는가?

· 그럼, 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라도 대출을 일찍 갚으려고 하는가? 수 수료를 내더라도 결국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10년간 이자율 3%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매년 300만 원씩 10년간 3000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실제 이자액은 원금분할상환인지 원리금분할상환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그런데, 2년만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면 이자는 600만 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전체 이자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흔히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약 1.5%이므로 1억원의 수수료는 150만 원이다. 10년간 갚으면 이자가 3000만 원인데, 2년만에 갚으면 이자와 수수료가 750만 원이다.

· 흔히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에 돈이 있다면 일찍 갚고, 더

좋은 금융상품이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이익이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더 좋은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

· 따라서 금융당국은 우선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부터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은 고정금리에 비해 금융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적다. 금융사들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데, '변동금리'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징벌적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의 비율이 낮아지면 이미 대출한 사람들이 갈아타고,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도 이뤄질 것이다.

▶대출상품 갈아타려면 잘 따져야 한다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어서 채무자들이 대출상품을 갈아타기 쉽도록 하려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시중금리가 조금씩 오를 전망이기에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 이자가 내려가는 국면이면 채무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걱정을 덜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싼 돈을 찾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싼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신규대출 가능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2018년 3월 기준)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금리는 3.09~3.75%로 3년전 같은 시기의 3.10~3.47%보다 높다. 실제로 1억원을 연이율 3%로 빌릴 때 15년 만기는 월 69만581원(원리금 균등상환 기준)의 원리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출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은 15년 만기의 3분의 2 수준인 42만1604원으로 떨어진다. 만기 연장으로 월 27만원가량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달 내는 이자가 줄지만 이자를 내야 하는 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2배나 늘어나서 총이자리는 크게 늘어난다. 1억원을 3% 이율로 빌릴 때 15년 만기 시 총 이자액은 2430만3520원이지만 30년으로 늘리면 이자액은 5177만469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 더 큰 문제는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대출심사기준에 맞추어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소득이 높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 강화된 기준에 맞출 수 있지만, 그렇지않는 사람은 대출한도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탈적 금융거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금융기관의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뉜다. 신용대출은 개인이나 단체의 신용에 의존하여 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인을 세워 대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간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다.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저당을 잡고 해당 물건의 가치보다 적은 금액만 대출하기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방식이다.

·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정할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아도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0.3~0.5%씩 달라지기도 한다. 작은 이율의 차이도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큰 차이를 내기에 매우 불합리하다.

· 현재 많은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연체로 '고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약속한 기일보다 원리금을 늦게 내면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약속한 기일보다 일찍 원리금을 내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여 편하여 영업한다.

· 따라서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려는 것은 채무자가 다소 여유가 있으면 원리금을 일찍 갚아서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현재 대출보다 조건이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갈아타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고, 가산금리 결정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전반적으로 가산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어떤 경우에도 채무자는 빚을 갚을 때만 해방될 수 있기에 꼭 필요할 때 합리적으로 빚을 내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약탈적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짓는다

·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9개 지구를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101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5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구를 선정했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지역 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해 근린재생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공모를 통해 2018년까지 5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9곳을 선정했다

·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고성·삼척·양구·횡성·정선, 충북 옥천,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등 9개 지구를 선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다.

·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삼척 도계읍은 120가구(국민임대), 고성군 거진읍은 100가구(영구임대 20, 국민임대 60, 행복주택 20), 양구군 양구읍 100가구(영구 20, 국민 80), 횡성군 우천면 60가구(영구 10, 국민 30, 행복 20), 정선군 정선읍 100가구(국민 70, 행복 30) 등이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100가구(영구 50, 국민 50), 충남 부여군 부여읍 150가구(국민 100, 행복 50), 전북 완주군 상관면 135가구(국민), 전남 곡성군 곡성읍 150가구(영구 40, 국민 50, 행복 60)이다.

▶강원지역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

· 강원도에 5곳이 선정된 이유는 광산지역으로 주거가 낙후되어 공공주택의 수요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삼척시의 경우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과 주변지역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삼척시는 수요 맞춤형 공급방식 취지에 맞춰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석탄공사 사택부지를 활용해 120세대를 짓는데, 세대 당 60㎡ 규모의 국민임대를 건립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탄 사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 등 도계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정비와 함께 임대수요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곡성에 짓는다

·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곡성군 곡성읍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문화·복지·여가활동 관련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할 것이다.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해 농촌지역의 복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곡성읍에는 영구임대 40가구, 국민임대 50가구, 행복주택 60가구 등 150가구를 짓는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선정기준과 거주조건이 다르기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조건을 잘 살피기 바란다.

영구임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선 입주하고 다음 순위로 차상위계층이다. 국민임대는 신혼부부, 주거약자,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부모부양자 등이 우선 입주하고, 소수이지만 일반인도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생활편의시설에 있는 곳에 짓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이미 생활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짓는다. 예컨대, 옥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거주 환경이 매우 양호한 곳이다. 고성군 사업 대상지는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2021년까지 100가구의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마을도로 정비, 어린이 공원과 주민쉼터, 마을 공동텃밭, 친환경 주차장까지 조성될 것이다.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함께 추진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19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건설 사업비 중 10% 가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주택공사와 사업협약 체결 등을 한 후 2019년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주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자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를 접수받으면 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다.

▶ 농촌지역 복지허브로 키운다

·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선정된 전남 영암군은 10월에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와 협약식을 가졌다. 영암군이 학산면 독천리 일원에 공공주택 120호(국민 80, 영구 20, 행복 20)를 짓기 위해 사업비 153억 원을 투자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 인허가와 관계기관 지원협의, 관련 기반시설 설치와 지원,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건설사업비의 일부와 기반시설 설치비와 원인자 부담금, 마을계획 용역비를 부담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지구지정, 지구계획·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토지 보상,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 시행 등의 업무와 주택건설 후 운영·관리를 수행하며, 주택건설비용·마을계획 용역비를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하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짓고, 주민들이 농촌지역의 허브로 키우길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는 주민이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주민은 그 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게 되길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여성폭력 상담 29만 건,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7년에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상담센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상담은 28만9032건이라고 발표했다. 여성폭력 상담 약 29만 건은 전년도의 통계보다 8.3% 증가된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18만326건으로 작년도보다 1만5000여 건이 증가하면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다음은 성폭력으로 2만1470건, 성매매는 3405건이었다. 수많은 여성이 가정에서 남편에 의해 폭력을 당했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되었다.

▶데이트폭력과 사이버 성폭력이 늘었다

· 여성이 겪는 폭력 중 가장 많은 것은 가정폭력이지만, 주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상담도 매년 크게 늘었다. 연인들이 사귀는 과정에서 행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상담은 2014년 1591건에서 2015년 2096건, 2016년 4138건, 2017년 8291건 등으로 매년 거의 두 배씩 늘었다.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처벌),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현장),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와 인식개선(인식) 등 4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여성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성관계 혹은 성폭력 장면 등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성폭력을 한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를 더욱 키운다.

▶누구든지 손쉽게 상담할 수 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2017년 여성폭력 상담건수 약 29만 건 중 전화상담이 23만 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전화상담이 많은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은 익명성이 일정부분 보장되기에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피해자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피해자가 여성폭력 상담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내방상담은 3만2752건으로 전체의 11.3%이고, 상담원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문(현장)상담은 1만827건으로 전체의 3.8%이

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과 상담원이 대면한 상담은 4만3579건이고 전체의 15.1%이었다. 대면상담은 전화상담에 비교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한편, 사이버상담은 1만3805건으로 전체의 3.8%이었다. 사이버상담의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전년 대비 33.1%가 늘었다.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담한다면, 사이버상담은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폭력 상담센터는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유형화시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일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하기 바란다

·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에 노출된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성긴급전화 1366’로 전화하여 긴급한 구조·보호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로 1366번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고 통화료도 없다.

·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여성이 신고하면 ‘1366’은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 일시보호, 법률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필요하면 경찰청과 검찰청이 참여하고, 관련 의료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 여성부는 가정폭력상담, 성폭력상담, 성매매관련 상담 등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사업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화상담과 내방상담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채팅 상담이 이루어진다.

· 1366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며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가 연계된 경우가 많기에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늘려갈 예정이다.

▶피해자는 피해자보호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상담·치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1366센터는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시 입소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 피해자는 최장 1개월 동안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무부 ‘법률홈닥터’와 연계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 등을 통해 심리치료 등 회복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강화시키고 있다.

▶사전교육과 관계자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폭력이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전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이 절실하다. 성차별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을 ‘부부싸움’이라 부르고,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로 표현한다. 연인간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사랑싸움’이고, “싸우면서 애정도 커진다”는 식으로 미화된다. 치명적인 폭력조차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최근 늘어나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늘리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받았을 때에 신속하게 1366으로 전화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는 성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이므로 생애주기별로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직장 등 모든 생활공간에서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의 피해경험을 SNS에 폭로하는 ‘#MeToo 캠페인’이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국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

한부모가족,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임신·출산부터 교육·자립·취업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생계와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이용 가능한 정부의 복지급여를 쉽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6년에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한 후 바뀐 주요 사업별로 지원내용, 소득기준, 기관명, 연락처 등을 수록하였다.

▲종합안내책자는 이렇게 구성되었다

· 여성가족부가 만든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분야별로 구성되었다. 이 책자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가 주는 복지급여와 공공기관이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도 소개하였다.

▲임신·출산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임신·출산시에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와 출산비용을 지원받고, 출산후 입소 가능 시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저소득층은 자녀의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등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양육·생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양육·생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양육지원은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에 적용된다.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표준보육비를 지원받고, 유치원을 이용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집에서 직접 양육해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생계지원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를 넘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고 44% 이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44%를 넘고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은 여러 부처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다. 보건복지

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정부양곡할인 5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차등 감면한다. 환경부는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의 50%와 차상위계층에게 요금의 35%를 감면한다. 문화체육부는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7만원을 지급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기초수급자에게 8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무부는 과태료 50% 이내를 감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초수급자에게 자동차검사수수료를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에게 50%를 감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꼼꼼히 살펴보면 더 많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설·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이다.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가 크게 강화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이 많다. 과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다양하고, 각 사업마다 입주조건이 다르다. 평균 수준으로 생활하는 무주택자도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지만, 경쟁률이 낮을 때에는 다른 계층도 좋은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교육·취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교육비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대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사실상 대학교를 무상으로 마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한부모 자신의 교육에 투자하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자립의 길일 수도 있다.

▲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금융법률 분야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법률구조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과 양육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4대공·종묘·조선왕릉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미혼부는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자

너 건강보험·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가 필요하면 이곳을 클릭한다

· 한부모가족지원 종합정책 안내책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에서 구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제별 정보→ 한부모가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어야 하지만, 당사자도 복지정보를 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대한민국의 각종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정보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복지급여의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신청조건을 표준화시켜 한번 신청으로 필요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http://mogef.go.kr>

기혼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 한국인의 고용률은 결혼 전에는 남녀가 비슷하지만, 결혼 후에 성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점차 사라졌지만,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전하다.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없애야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고, 초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남녀 고용률의 격차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대안을 찾아본다.

▲유부남·유부녀 고용률 격차 28.5%p

· 통계청의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남녀 고용률 차이는 미혼은 1.6%포인트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경우 그 차이가 28.5%포인트나 되었다. 결혼 전 남녀의 고용률 차이가 미세하지만, 결혼후 성별차이는 확 커진다.

▲기업은 남성 노동자를 좋아한다

· 기업은 남성 노동자를 고용하길 좋아한다. 고용률은 미혼의 남성이 52.8%, 여성이 51.2%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성은 81.9%, 여성은 53.4%였다. 미혼자는 남녀 모두 해당 인구의 과반수가 고용되었지만, 기혼자는 남성은 더 많이 고용되고 여성은 거의 늘지 않았다.

· 남녀의 고용률은 미혼의 경우 2016년에는 남성이 1.3%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는데 1년 사이에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2016년 29.4%포인트였으며 1년 사이에 격차가 약간 완화했다. 기혼자의 성별 취업률의 격차가 조금 개선되었지만, 성별 격차가 28.5%라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혼자 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것들

· 한국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53.4%에 불과하고, 기혼 남성 취업률보다 28.5% 낮다. 이 때문에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을 심각하게 겪었다.

· 15~54세 기혼 여성 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자의 비율은 37.5%였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20만7천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8.6%였으며 전년보다 그 비율은 0.2%포인트 높았다. 같은 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높고, 어머니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낮았다.

· 아버지의 고용률은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97.1%, 7~12세이면 96.5%, 13~17세이면 94.7%였다. 같은 자녀 연령대 기준으로 어머니의 고용률은 각각 46.4%, 59.5%, 69.2%의 분포를 보였다.

· 아버지는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되어 있지만, 어머니는 고용에서 배제되기 쉬웠다. 어머니는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6%로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직 은행원인 한 경력단절 여성(48)은 “뻔한 얘기 아십니까?, 우리나라 남녀평등요, 요원하죠. 남성 위주의 사회가, 남성 위주로 고용하는 거, 이거 후진국적 현상 아닌가요?” 라며 “출산하면 여성이 당하는 불평등은 영원히 해결 안될지도 모르죠”라고 비관론을 폈다.

▲노동시간은 줄지만 아직도 길다

· 2017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2016년보다 0.2시간 줄었다. 남성은 평균 45.2시간, 여성은 평균 39.6시간으로 2016년보다 각각 0.2시간, 0.1시간 감소했다. 2017년 맞벌이 부부의 주당 근로시간은 남성이 46.3시간, 여성은 40.3시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0.3시간 늘었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 2017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3.3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10.1시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8시간, 0.6시간 줄었다. 2016년 한국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통계청이 제시한 12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지만, 아직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어도 관행적으로 야근이나 초과 근로를 했던 것을 고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혼여성, 가사노동도 불평등하다

· 여성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남성보다 5시간 가량 짧지만, 가사노동을 고려하면 훨씬 더 길게 일했다. 2017년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59.1%에 달했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편 20.2%, 부인 19.5%에 그쳤다.

· 2016년 기준 가사노동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부인의 경우 식사 및 요리 준비, 설거지를 ‘거의 매번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90.7%, 88.3%이었다. 남편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가사노동은 집안청소였다. 응답자의 69.8%가 ‘집안청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의 매번 한다는 응답자는 5.2%에 그쳤고 22.5%는 주 1회 이하로 집안청소를 한다고 반응해 부인의 54.5%가 집안청소를 거의 매번 한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됐다. 남편의 가사분담을 주로 청소에만 그치고, 여성의 분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자

·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은 출산휴가가 90일인데, 출산후 몸을 챙겨 일하기 위해서는 출산 휴가 90일로는 부족하고 이탈리아처럼 5개월로 늘리자. 출산휴가를 활용하면 현재는 급여를 대기업은 60일은 기업이 부담하고,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중소기업의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30일씩 3번 청구할 수 있다.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더 줄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출산휴가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나누어 쓸 수 있지만,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널리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는 최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그중 3일은 유급)을 쓸 수 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10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최대 200만 원)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면 ‘출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직장에서 성차별을 완화시켜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면 ‘초저출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2에서 2018년 0.97로 낮아질 것이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기초연금, 2018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2018년에 크게 바뀌는 복지제도는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의 인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에 속하는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9월부터 단독가구는 25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40만 원까지 인상된다(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단독가구는 30만원, 20-40%는 2020년부터, 나머지는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비급여를 사실상 없애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무각출 연금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보험료를 낸 것을 조건으로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세금으로 받는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액수가 많지 않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이 있는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그 기준을 공표하는데, 2018년에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2019년에 각각 137만원과 219만2천원) 이하이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가 아니라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을 말한다.

▲근로소득이 467만 원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환산한 금액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노인이 큰 재산이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산다면 단독가구는 월 271만 1428원 이하, 부부가구는 467만4285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여 근로소득이 추가되더라도 단독가구로 271만 원, 부부가구로 각각 근로소득이 있다면 467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2018년 84만 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공제금액도 추가로 인상될 것이다. 노인이 매달 근로소득이 상당히 있더라도 큰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상당한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당한 재산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과,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을 합한 후에 부채를 공제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배기량 기준 3000cc 이상 또는 자동차 가액 4000만 원 이상)와 회원권의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고급 자동차와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은 아파트 등 다른 일반재산에 비교하여 월 소득환산액이 높게 평가된다.

아파트 등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도 기본재산 공제를 반영하면 기초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므로 일반재산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0.04를 곱하고 다시 12월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산출된다.

쉽게 말해 고급 자동차를 중형 자동차 등으로 바꾸고, 은행통장에 많은 금액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를 아파트 등 일반재산에 투자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낮출 수도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은행통장에 2000만 원이 있고, 집 등 일반재산이 3억9300만 원 이하이지만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고, 부부노인은 6억2880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은 공제액이 많고, 기본재산 공제를 고려할 때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부자 자녀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당한 근로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인정액란 낱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때도 사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함께 사는 경우 부부와 2촌 이내 친족, 따로 사는 경우에도 1촌 이내 친족은 부양의무자이다. 따라서 어떤 노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는 따로 살더라도 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부양비를 산정한다. 어떤 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노인단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부부의 이름으로 된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65세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한다

65세 이상은 누구든지 기초연금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등이 아니라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담당자는 신청한 노인 중에서 수급자를 선정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나 다음 달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소득인정액이 올해 수급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도 향후 5년간 자료를 보관하여 기준이 바뀌어 수급대상이 되면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기준은 매년 상향되는 경향이 있기에 올해 수급자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해에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노인부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배우자의 이름으로 재산이 많았던 사람은 그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기에 자신의 지분만큼만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타는 노인이 아니라면 일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

자녀 용돈보다 연금으로 생활한다

대한민국 노인은 무슨 돈으로 살고 있는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2016년 평균 소득은 177만1400원이었다. 노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았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이전소득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다. 노인가구의 소득구성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에서 이전소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옥금·이은영 연구자가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년)를 분석하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2016년 평균 소득은 177만1400원으로 밝혔다. 노인가구의 소득원별 금액과 비율을 보면, 공적이전소득은 58만9000원(33.3%)으로 근로소득 51만3400원(29%), 사업소득 33만3400원(18.8%), 사적이전소득 20만2500원(11.4%), 재산소득 2만7700원(1.6%) 등 다른 소득보다 가장 컸다.

젊은가구는 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노인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고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후 2018년에 30년이 되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노인이 되어 연금을 타고, 기초연금의 액수가 늘어나면서 공적 이전소득이 커졌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졌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다. 사적이전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2016년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은 58만9000원(33.2%)으로 사적이전소득 20만2500원(11.4%)의 2.9배이었다. 이는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젊은 시절에 낸 보험료에 의해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이 주로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보다 3배 가량 많다는 뜻이다. 노후의 삶이 자녀의 부양능력과 용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대한민국 노인의 삶이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노인이 있는 가계의 동향을 보면,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은 2013년 42만9000원에서 2016년 58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의 액수가 커지면서 그 비중도 2013년 25.4%에서 2016년 33.2%로 높아졌다.

▶공적이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크다

·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만~7만 원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되었다.

·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에는 기초연금액이 큰 영향을 주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9만9100원을 주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14년 7월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가구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2만원에서 2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2배의 80%까지 지급했다.

· 공적이전소득은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다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적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사적이전소득은 감소되고 있다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에 사적이전소득은 감소되었다. 사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비중은 2013년 22만5000원(13.4%)에서 2016년 20만2000원(11.4%)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지난 4년간 금액은 2만3000원이 줄고, 그 비중은 2.0%포인트나 줄었다. 이전소득의 총액은 늘었지만 사적이전소득은 감소되었기에 2016년 노인가구 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공적이전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 효를 기반으로 둔 가족주의가 약화되었다는 뜻이다.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식이 열리는 대신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1998년 89.9%에서 2008년 40.7%, 2016년 30.6% 등으로 떨어졌다. 국가와 사회가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2.0%에서 2008년 47.4%, 2016년 50.8%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젊은층의 소득이 줄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 자녀는 성장하여 늙은 부모를 봉양한다는 세대간의 품앗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위한 기반이 취약해졌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봉양해야 한다는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가 늙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후 소득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 노인가구의 2016년 평균소득에서 이전소득은 79만1500원으로 전체의 44.6%이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87만6800원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을 키우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기에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 노인복지의 핵심은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이고, 일을 통한 복지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이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기에 노인 일자리를 보전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공적이전소득에서 주로 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연금을 늘려서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할 수 있도록 생애 첫가입을 ‘인생선물’로 주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낼 때 더 많이 탈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노후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 현재 노인은 주로 자녀 용돈보다 공적이전소득으로 생활한다. 국민은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여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 연금을 늘리고, 정부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http://institute.nps.or.kr>

미수령 연금저축, ‘통합연금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투자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가 전체의 1/4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미수령 연금저축은 28만2000개이고 금액이 4조 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은 신탁, 펀드, 보험 등 다양하다. 만기일이 되면 가입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연금저축이 4조원이다. 수령하지 않는 연금저축을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

▶연금저축 중 25.6%가 지급되지 않았다

2017년말 우리나라 연금저축 총 계좌수는 672만8000개이고 적립금은 121조8000억 원이었다. 이 중 연금수령 개시일이 돌아온 것은 72만3000개이고 적립금은 15조6000억 원이었다. 문제는 수령 시기가 도래한 연금저축 중 28만2000개 계좌의 4조 원(금액기준 25.6%)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돈이 무려 4조 원이다.

가입자가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 28만2000개 중 가장 많은 업권은 은행으로 18만7000개(전체의 66.4%)이다. 이는 연금저축이 도입될 때 은행이 판촉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가입하였지만 도중에 계좌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만기가 되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는 돈이 가장 많은 업권은 생명보험회사이다. 생명보험회사에서 찾아가지 않는 연금저축은 1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41.0%이다.

▶연금저축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

연금저축이 만기되었지만 지급신청이 되지 않는 계좌가 많은 이유는 가입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었지만 가입자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거나 받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82.5%이었다. 연금저축을 받아야 할 사람 중 전체의 1/4은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 중 8할 이상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밖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이 17.3%를 차지했다. 일부 가입자는 연금저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급을 보류하거나 빚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연금저축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되면 가입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어도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신청하도록 알려준다. 가입자들이 처음에는 주변의 권유나 관심을 갖고 연금저축에 가입했지만,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의 책임이 크지만 은행과 보험회사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입자가 남긴 전화, 주소, 이메일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가입자를 찾기 어려우면 ‘은행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가입자가 가장 최근에 계좌를 트 금융기관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여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에 넣어서 금융기관이 가입자를 적극 찾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그 속성상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계좌이고, 그동안 가입자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바꿀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사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연금저축은 사라지지 않는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은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적립금을 계속 운용하기에 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저축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개인 연금저축 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한 뒤 연금수령을 늦추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초저금리시대에는 연금저축을 찾아서 다시 예금에 넣은 것보다는 연금저축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의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연금저축으로 받는 돈이 월 100만 원 이내이면 세금이 낮지만 1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중과세될 수 있으니 적절한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찾으면 된다. 통합연금포털 등에서는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가입여부를 잘 모르는 사람은 ‘통합연금포털’에 가입하여 자신 계좌가 있는 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만약, 연금저축이 있으면 연금수령을 언제부

터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가입자는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과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과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다르므로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절차와 해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인터넷 등)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옛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 원 미만)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를 위해 투자한 연금저축 중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찾아가지 않는 계좌가 28만2000개 이고 적립금이 4조원이니, 관심있는 사람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연금저축이 있으면 가입자는 수익률과 세금 그리고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게 연금 개시시기를 선택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노인진료비 증가, 대안이 필요하다

· 2017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25만 원을 넘었다. 전체 노인진료비는 28조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1%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 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노인진료비가 증가된 요인과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인 1인당 진료비 425만 원을 넘었다

·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그중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급여비는 51조8225억 원으로 전체의 74.8%이고, 17조5127억 원(25.5%)은 환자 본인부담금이다. 건강보험을 활용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기에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5만 원을 훌쩍 넘긴다.

·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28조3247억 원으로 전체의 40.9%이다. 노인진료비는 전년도보다 12.1% 증가했으며 14조1350억 원이었던 2010년보다 2배나 늘었다. 노인 인구는 680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는 전체의 40.9%나 됐다. 노인 1인당 진료비 425만5000원은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 139만1000원보다 3배 이상이었다.

▶노인진료비는 늘고 분만비는 줄었다

· 노인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62만 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47만 명), 급성기관지염(199만 명), 등통증(153만 명) 순이었다. 노인 환자는 노년성 백내장(21만 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0만 명), 폐렴(10만 명), 뇌경색증(8만 명) 등으로 입원을 많이 했다.

· 한편, 저출산 영향으로 2017년 분만 건수는 35만8285건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그중 자연분만은 19만6960건이고, 제왕절개는 16만1325건(분만의 45.0%)이었다. 분만기관수도 581개소로 지난해에 비교하여 4.3% 줄었다.

▶암 진료를 받은 환자는 140만 명이었다

· 2017년에 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39만9743명으로, 이 중 30만6399명이 그해 신규 중증 암환자로 등록했다. 암 환자 진료비는 7조6645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11.1%를 차지했다. 신규 암 환자가 쓴 진료비는 3조3949억 원(암진료비의 44.3%)이었다.

2005년 9월부터 2017년 말까지 암 중증환자로 등록하고 생존한 사람은 201만4043명이다.

·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581만명)으로 2조9213억 원이었으며, 2형 당뇨병(254만 명) 1조8509억 원, 만성신장병(21만 명) 1조8126억 원, 알츠하이머 치매(40만 명) 1조6181억 원 순이었다.

· 입원 진료비가 많았던 질병은 위장 및 결장염(33만4175명), 노년백내장(28만3406명), 폐렴(26만9734명) 순이었다. 2010년 대비 2017년 입원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질병은 어깨병변으로 2010년 3만8560명(36위)에서 2017년 10만9362명(8위)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치매 입원환자도 3만2566명(47위)에서 10만5706명(9위)으로 증가했다. 외래 진료비가 많았던 질병은 급성기관지염(1597만 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518만 명), 급성편도염(689만 명) 등이었다.

▶고액 환자가 진료비의 43.3%를 썼다

· 2017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이고, 그 중 입원 2.8일과 외래 17.5일이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많았다.

· 1인당 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환자는 221만6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7%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제외한 이들의 진료비는 30조5799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3%였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4.7%가 전체 진료비의 43.3%를 쓴 셈이다. 고액 환자는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들은 노환으로 연명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노인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 고령사회에서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이 늘면서, 노인들의 병원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만성질환자가 단골병의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 한 군대를 계속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 노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은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렵고 증상을 관리하여 악화를 막는 것이 많다. 따라서 노인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때에 먹어 기초체력을 다지고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심한 운동보다는 날마다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받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기에 우울증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언론은 청소년 자살을 걱정하지만, 실제 자살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인이다. 노인은 영양가 있는 식사, 꾸준한 산책,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하루를 살더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장의 대들보다

· 2017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직장 가입자 3690만 명(전체 가입자의 72.4%)이고 지역 가입자 1404만 명(27.6%) 등 총 5094만 명으로 국민의 97.2%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 2017년 보험료 부과액은 50조4,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42조4486억 원, 지역보험료는 7조9682억 원이었으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1178원(직장 10만7449원, 지역 8만7458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99만1349원이었고, 보험급여비는 107만934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09%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강보험 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 등)를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이는 보험료 이외에 세금으로 조성되는 돈 때문이다).

· 2017년 요양기관수는 의료기관 6만9808개소(76%), 약국 2만1737개소(23.7%) 등으로 9만1545개소였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간호사 18만5853명(50.4%), 의사 10만241명(27.2%), 약사 3만6980명(10%) 등 36만8763명이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여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건강을 잘 지켜야 진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된다

·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경감하고, 그 대상을 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구조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 노인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요양등급을 받으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인력으로부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요양등급을 받는 사람이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으면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받으면 급여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면 급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기타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의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 중 본인이나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나머지를 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한다.

▶본인부담금의 경감대상이 많아진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수급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여 본인부담금액은 월 19만8000원을 넘지 못했다.

·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감률을 차등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자를 하위 25%에서 50%까지로 크게 확대한다. 경감률은 하위 25%까지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하고 본인부담금은 월 최대 15만9000원으로 낮춘다.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를 넘고 50%이하는 본인부담금의 40%를 경감하고, 본인부담액은 월 최대 23만8000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바뀐 제도에서도 보험료 하위 50%를 넘는 사람(상위 50% 해당자)은 본인부담금 경감률이 없고 부담액은 월 최대 39만7000원으로 유지된다.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49만7000명이다. 그중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9만5000명으로 전체의 19.1%이고, 25%를 넘고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만8000명으로 전체의 21.7%이며, 50%를 넘는 사람은 29만4000명으로 전체의 59.2%이다.

▶경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 원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하면 경감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4인가구 기준 재산과표액은 현행 2억4000만 원 이하에서 8월부터 3억29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보다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의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경감률이 높아지면 수급자의 약 40%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 어떤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로 월 100만 원을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15%인 15만 원이다. 그 사람이 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25% 이하에 속하면 본인부담금 경감율이 60%로 실제 부담금은 6만 원이고, 25%를 넘고 50% 이하면 본인부담금 9만 원이다.

· 시설급여로 월 130만 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20%인 26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 사람이 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25%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경감율 60%가 적용되어 실제 부담금은 10만4000원이고, 25%를 넘고 50% 이하면 본인부담금은 15만6000원으로 재가급여비보다 상당히 늘어난다.

· 문제는 시설급여를 받을 경우에 이용자의 식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식대와 간식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와 약값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경감대상자도 식대와 진료비는 본인이 추가로 내기에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의 차별을 철폐해야

·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크게 달라진다. 요양병원의 환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건강보험은 환자의 식대도 보험으로 처리한다.

· 또한, 요양병원의 환자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적용받는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연간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액이 80 원을 넘으면 모두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연간 본인부담액이 514만 원을 넘으면 모두 보험처리된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 경감이 있더라도 추가로 식대를 모두 본인이 내고, 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금 한도액도 없기에 한도액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식대를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건강보험에 있는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요양등급을 받아 일상생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본인부담금이 싸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요양병원을 이용하여 의료자원을 오남용하면 당사자의 본인부담금은 줄지라도 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되는 비용은 급증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식대를 보험급여로 포함시키고,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도입하여 건강보험과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장기요양기관의 절반이 폐업했다구요?

한 국회의원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절반 폐업”이란 보도자료를 냈다. 그녀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기관 4만4238개소 중 2만2760개소가 폐업하여 폐업율이 51.4%라고 주장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요양기관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양원 입소자와 가족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정부가 시설 이용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율 51.4%는 가짜뉴스

최도자 국회의원이 발표한 통계는 ‘가짜뉴스’이다. 2008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은 4만4238개소이고, 같은 기간에 폐업한 기관은 2만2760개소이니 폐업율이 51.4%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산식이다. 예컨대, 한 도시에서 매년 500명이 태어났고 250명이 사망했으며 연말에 1만명이 살았다고 가정하자. 최도자 의원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10년간 새로 태어난 아동이 5000명인데 죽은 사람이 2500명으로 사망률은 50%라는 계산이다. 사망률은 그해 죽은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도시의 연도별 사망률은 2.5%이고, 10년간 평균사망률도 2.5%이다. 10년간 죽은 사람을 태어난 사람으로 나누어 사망률을 계산하지 않듯이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폐업한 기관을 신설된 기관으로 나누어 계산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폐업율은 10%선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그해 폐업한 기관수를 연도말 기관수로 나누는 것이 바른 계산방식이다. 이는 사망률은 그해 사망한 사람수를 연도말 사람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된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2008년 하반기에 6.2%(연간 추계 12.4%), 2009년 12.3%, 2010년 29.4%로 높아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한 사람들이 초기에 어려움으로 폐업한 경우가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2011년 18.6%, 2012년 15.1%, 2013년 13.1%, 2014년 12.2%로 점차 줄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착되면서 요양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셈이었다. 최근 폐업율은 2015년 9.4%, 2016년 10.6%, 2017년 10.1%, 2018년 상반기에 5.5%(연간 추계 11.1%)로 매년 평균 10%선을 유지했다.

▶기관유형별로 폐업율이 다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년간 폐업한 2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 폐업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10년간 장기요양기관

의 폐업율은 51.4%인데, 그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폐업율은 58.9%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5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50.6%, 노인요양시설의 38.6%가 폐업되었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노인요양시설도 5482개소가 설치되었고 2118개소가 폐업했으므로 폐업율은 38.6%라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율은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3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요양시설은 2017년에 181개소가 폐업했는데 연도말 기관은 3289개소로 폐업율은 5.5%이다. 9명 이하가 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15개소 중 317개소가 폐업하여 15.7%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807개소 중 161개소가 폐업하여 8.9%이며, 재가장기요양시설은 1만3266개소 중 1400개소가 폐업하여 폐업율은 10.6%이었다.

·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설치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시설은 매년 신설과 폐업이 많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에 9인 이하 기관은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 폐업율에는 ‘무늬만 폐업’도 포함

·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51.4%가 아니고 연간 폐업율은 10%선이었다.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이 10.1%라면 “10개 중 한 개소가 망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다.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은 ‘파산’이 아니고 ‘폐업신고’이다.

· 장기요양기관 중 폐업율이 가장 높은 재가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센터’로 불린다. 흔히 작은 사무실을 얻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을 이용자로 받고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사 등인 시설장이 사무실이 있고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만 모집하면 차릴 수 있다.

· 2017년에 재가장기요양시설은 2241개소가 새로 등록되었고, 1400개소가 폐업되었으며, 1만3266개소가 운영되었다. 어떤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다가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옛 주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새 주인은 ‘설치신고’를 한다. 이처럼 폐업율에는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 더욱이 일부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폐업한 후에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신고하여 ‘무늬만 폐업’을 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경우도 있지만, 2017년에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이 2059개소일 때 신설된 기관이 3114개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위하여

· 10년간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율이 51.4%가 아니고, 매년 폐업율 약 10.0%에도 허수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왜 장기요양기관은 ‘경영난’을 호소하는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 망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이 망하면 시설장은 경제적 손실이 크고,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하는 노인과 그 가족도 피해를 보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최도자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수가를 꾸준히 인상하면서도 요양보험수가를 억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적정한 수가는 요양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식대를 병원 입원환자의 식대처럼 보험처리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연간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도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병원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입원자의 식대가 보험처리되고,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노인환자를 적극 유치한다.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살고 싶어도 본인부담금이 적은 요양병원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을 달성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활용하기

공자는 논어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정부는 시민이 배움을 즐기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각종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 하반기 ‘시·행·학’ 프로그램 57개를 발표했다. ‘시·행·학’은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의 약칭이고, 응모된 8개 분야 108개 사업 중 57개가 선정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의 재정 지원을 받기에 무료 혹은 소액의 참가비로 운영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교육과정에 등록하기 바란다.

▶8개 분야 57개 과정이 운영된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시·행·학’을 운영한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3개), 빛고을 시민대학(3개), 일자리 연계 및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13개), 장애인 평생학습(17개),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4개), 미래설계 아카데미(4개), 앙코르 커리어개발 교육과정(10개), 사회공헌활동가 양성과정(3개) 등이다.

평생교육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준비하는 청년 등에게 강조점을 둔 것이 많다. 각 과정마다 표적 집단이 있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각 사업마다 목적, 운영기관, 교육기간, 장소, 모집대상, 강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에 주목한다

모든 지역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인권도시 광주’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의 비전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3개에 주목하여 보자. 선정된 프로그램은 ‘Dream Coaching Manager’, ‘시민이 행복한 복지 인문학’, ‘오월의 인문학’이다.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드림 코칭 매니저’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드림 코칭 매니저를 양성후 파견사업을 통해 사회환원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운영하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인문학’은 모든 시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화·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30분까지 12회 36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시민

3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다.

· ‘오월의 인문학’은 한편의 소설과 서른 편의 시로 읽는 오월이야기이다.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정치적 5·18을 문화예술의 5·18로 재구성, 시민교양프로그램으로 승화하여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갖춘 인문학 강좌를 추구한다.

▶시민대학과 인문학 강좌를 활용한다

· 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빛고을 시민대학’과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살펴보기 바란다. 빛고을 시민대학 3종은 지역 대학교가 진행한다. 조선대 평생교육원은 ‘100세 시대 평생학습 전문 플래너’, 전남대 지식재산선도사업단은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창업과 특허출원’,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은 ‘마음챙김과 행복한 삶’을 주관한다. 신청한 시민은 무료 혹은 저렴한 참가비로 시민대학을 수강할 수 있다.

·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4종이다. 그중 카페필로소피아가 ‘나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여행’을 운영한다. 8월말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100여 명에게 특강을 한다. 인문지행은 ‘역사를 만드는 저항의 인문학’을 진행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저항정신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취·창업생과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되어줄 인문교양 교육을 시도한다. 매주 금요일 산수도서관에서 진행한다. 남도음식문화컨텐츠진흥회는 ‘부엌속의 인문학’을, 시민인문학협동조합은 ‘양성평등 인문학- 관계의 함수를 찾아라’를 주관한다.

▶일자리와 연계된 평생학습을 찾는다

· ‘일자리 연계 및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13개이다.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습득한 기술로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볼 수도 있다. 주관 기관과 사업명은 다음과 같다.

· 빛고을50+가 ‘주민갈등 자율조정가’를 양성하고, 남도전통음식연구회가 ‘코리아 디저트전문가’,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가 ‘그림책힐링지도사, 북스토리텔링지도사’, 광주국학원이 ‘명상전문지도사’,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동코딩 지도사’, 광주패션디자인학원이 ‘이주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패션디자인 교육’, 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젠더폭력예방교육 지도자’, 수완소통연구원이 ‘내 인생에 입히는 나만의 색’, 한국예술진흥원이 ‘도자기 공예수업 진로멘토’, 편앤조이에듀케이션이 ‘만지고 놀며 배우면 수학이 즐겁다’, 조선이공대 평생교육원이 ‘4차산업 연계 SW코딩+3D프린팅 융합교육 전문강사’, 대한안전연합이 ‘스쿠버다이빙 과정’, 엔디엘코리아컴퍼니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몸짓’을 운영한다.

▶미래설계와 커리어개발 과정이 있다

· ‘미래설계 아카데미’는 4개이다. 다가치포럼협동조합& 빛고을 50+가 ‘100세 시대, 나의 인

생2막 설계하기'를 시도한다.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과 자신감 회복, 취미와 공헌으로 직업 찾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큐룸이 '좋은 집주인 만들기- 셰어하우스', 펠침구삼이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융복합 메이커', 캔들리더십클럽이 '소통으로 행복한 삶 리더십과 스피치 기술'을 주관한다.

· '양코르 커리어개발 교육과정'은 10개이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영상미디어로 즐기는 인생' 과정을 운영하고, 나선희스피치커뮤니케이션즈가 '광주 청년방송인 양성'과 '시니어모델 양성', 오픈랩이 '3D프린팅 & IoT 융합 메이커 개발', 아이디어 캐빈이 '제로창업 스타트', 아모텍협동조합이 '갭이어 기획자 양성', 편앤조이에듀케이션이 '보드게임 이해하기', 광주수학체험관이 '스마트매쓰디자이너 양성', 꼬끼리협동조합이 '일상 메이커 도전하기', 장난감학교 쓸모가 '버려지는 장난감과 물건들의 재탄생'을 운영한다.

'사회공헌활동가 양성 과정'은 3개이고, 모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한다. 즉, 업사이클링 인생 되살림 활동가 양성, 맵시 무브먼트, 시민교육에 참여할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등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7종이다. 각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자립과 행복한 생활을 추구한다.

·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57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28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참여하여 배움을 즐기고, 배운 것을 나누기 바란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http://www.gie.kr>

위기가구는 ‘긴급복지’를 신청하자

· 경기가 나빠지고 겨울철이 되면 위기가구가 늘어난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세웠다. 2018년에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복지전담팀’을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복지’를 활용하기 바란다.

▶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전담팀이 있다

· 3508개소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2018년 9월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도 확대시켰다. 올해 신규 채용 복지공무원의 목표는 1543명이었지만, 9월말까지 2892명을 채용(목표 대비 187.4%)했다.

▶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시민은 내용을 잘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예컨대, 다수 시민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읍·면·동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는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말을 정확히 모른다. 교육급여는 시민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신청, 부양의무자 등을 정확히 알고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아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위기에 취약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다. 기존에 활용했던 단수·단전가구,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8만 1000명의 위기가구와 가구원에게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돌봄·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약 5만 9000명에 비하여 38% 증가한 수치이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24만

3000명)의 약 33.4%에 해당된다.

▶빅데이터로 복지급여 수급자를 찾는다

· 우리나라는 복지급여를 원하는 국민이 신청할 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복지급여의 수급이 낙인감을 주기도 하기에 원하는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준다는 것은 한편 타당하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여 복지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복지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 정부는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한다. 복지정보를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예측하고,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그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 정부는 이러한 발굴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추가하고, 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를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와 신고의무자를 확대한 후에 국민이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정보망서비스(SNS)·포털에 송출할 예정이다. 기차역·지하철 광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포스터, 리플릿 배포 등을 한다. 이를 통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도록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 첫째, 모든 복지급여를 당사자나 가족이 핸드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극히 일부 서비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를 고려할 때 교육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 등도 당사자나 가족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복지전담팀이 공부상으로 소득 인정액 등을 확인한 후 상담하도록 신청방식을 확대시켜야 한다.

· 둘째, 복지급여의 산정방식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표준화시켜 불편을 줄여야 한다. 현재 가구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등 제도마다 다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상식과 크게 다르고 차별적이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모든 재산을 합한 후 일정액 공제재산을 빼고, 남은 재산에 4%를 곱한 후 12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승용차는 보험가를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250만 원인 승용차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표준화시켜 모든 시민이 가구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복지로’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정부는 그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셋째, 복지급여의 종류를 360가지에서 범주화시켜 단순화해야 한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이용자가 적은 것은 관련 서비스와 통합시켜야 한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고등학생이 받는 교육급여와 60% 이하가 받는 ‘고교학비지원’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교육급여의 대상자를 60%로 올리고 고교학비지원을 없앤다.

· 행정복지센터 복지전담팀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복지급여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겨울철 취약계층 60만 명을 발굴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복지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 60만 명을 발굴하여 36만 명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5만 명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겨울에 취약계층을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하는지를 살펴본다.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발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가 위기에 빠지면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일거리가 줄어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지난 겨울철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59만8천명을 발굴하고 그중 35만7천명을 지원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행복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적극 확충하였다.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정부는 복지제도를 널리 알려 필요한 국민이 신청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과거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도 지금은 신청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어떻게 신청할 것인지를 잘 모르기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환과고독(鰥寡孤獨) 사궁(四窮)이었다. 늙은 홀아비, 늙은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 자녀가 없는 노인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대표적인 복지급여 수급자이었다. 전통사회에서 ‘독거노인’은 자녀가 없는 늙은 노인이었는데, 오늘날 자녀가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아서 일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까지 의미하고 있다.

· 최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독거노인을 포함하여 전체 1인 가구로 확대되고 있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와 달리 식사와 숙박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이 없기에 고독사 등에 노출되기 쉽다.

·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 보호가능성이 커진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1인 가구 2만 명을 추가하여 총 14만 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작년도보다 12.1% 증가한 4만2천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 복지급여를 새로 지원받는다. 또한, 33만 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을 지원받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가구를 찾는다

·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2016년 대비 12.6% 증가된 것은 민관합동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한 덕택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했기 때문이다.

· 위기에 빠진 가구는 관련 업무 종사자나 이웃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거나, 전기요금을 몇 달째 내지 못하면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는 징후이다. 사람이 살지만 전기를 전혀 쓰지 않거나, 문 앞에 우편물이 쌓여도 찾아가지 않으면 거주인의 거동이 불편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 주민생활에 밀접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상태를 보고, 요금을 제때에 내는지를 살펴 보며, 우편물이나 우유·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도 관심있게 살펴보면 위기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사무실에서 일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마을을 찾아서 주민을 만나고, 주민 사정을 잘 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반장, 민간단체 활동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이 협력하면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다.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

· 정부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면 상황에 따라 가볍게 지원하거나, 문제가 복잡하면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지원과 함께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최대한 연계시키고 있다. 정부는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을 활용하여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공공부조의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의뢰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자원연계를 하고 사례관리를 한다.

· 실제로 울산광역시는 고위험에 빠진 1인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한 시민이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혼자 살면서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는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콜중독에 빠졌고 생계도 어려웠다. 행정기관은 긴급의료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복지급여를 제공했다. 법률상담, 나눔천사기금, 울산행 복네트워크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생기를 되찾도록 지원하였다.

· 201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이거나 노인이라면 부양비를 산정할 때 기준을 크게 완화시켰다. 자신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부양비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시민은 부양의무자인 아버지도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성시는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였다.

▲도움이 필요하면 129 콜센터로 전화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등을 갖추고 있다. 복지제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복지로'를 검색하고 129 콜센터로 전화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가 실시되지만,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과다하여 취약계층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노후 주택을 수선하거나,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 사람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저소득층 대책, 이렇게 활용하라

·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지만,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저소득 근로연령계층 대상 자활사업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국민은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과 급여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국민은 어렵게 살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2015년 기준 약 93만명에 달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뜻이다.

·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친족으로 흔히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만 볼 뿐, 실제로 부양비를 제공하는지를 잘 살피지 않는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어 부양비를 받지 못해도 가난한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기 어렵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기에 폐지된다

·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폐지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됐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는 노인이 많지만 부양의무자 중에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이었다.

·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에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연령, 성별,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고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사라진다. 다만 이 경우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에 폐지된다. 이번 대책으로 비수급 빈곤층 약 7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

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소득을 늘린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진다. 즉,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생계급여가 따라서 낮아져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그만큼 생계급여를 더 지원한다. 정부는 7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넓힌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 약 1만6000명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 원 가량 생계급여를 더 받는다.

▶기초연금도 조기에 인상된다

· 기초연금도 조기에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대선공약에서는 2018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월로 늦추어졌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 2019년 4월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 원씩, 그 외 대상자는 2021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2019년에 약 150만 명, 2020년에 약 300만 명 기초연금 수급자가 매월 5만 원 가량 더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당장 수급자가 되지 않더라도 기준이 바뀌면 될 수 있도록 5년간 이력을 관리해 주기 때문이다.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2018년에는 군산·거제·통영·울산동구·창원진해구·고성·목포·영암·해남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하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한다. 노인일 자리는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 원)을 보장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되돌려 주기로 했다. 2019년 자활급여를 월 139만 원으로 가정하면, 약 2만 명은 월 최대 38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었다.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워 긴급복지가 필요하지만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자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을 2019년부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기준이 완화되면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더 많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복지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인다.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 달 생계급여를 인상된 기초연금액만큼 덜 받는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http://www.bokjiro.go.kr>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위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이고, 그중 1종 수급권자는 106만 5398명, 2종 수급권자는 42만342명이었다. 전년 대비 수급자 수는 1.6% 감소했지만,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총 진료비 7조1157억 원 중 6조9749억 원(진료비의 98%)을 기록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는 465만 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은 사람이 읍·면·동에 신청할 때 선정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이지만, 진료비는 약 7조 원이었다.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74만8794원으로 건강보험의 136만3342원 대비 3.5배이었다. 수급자 1인당 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건강보험 수급자 대비 4.6배를 받았다. 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3년 145만9000명에서 2017년 148만6000명으로 별로 늘지 않았는데, 전체 급여비가 늘어난 것은 1인당 급여비의 증가 때문이었다. 2013년 1인당 급여비는 350만9000원이었지만, 2017년에 465만5000원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인당 급여비는 5년간 501만9000원에서 651만6000원으로 증가되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

· 전국 의료급여기관 수는 9만1545곳이고, 그중 의료기관은 6만9808곳(76.3%), 약국은 2만 1737곳(23.7%)이었다. 2017년 4월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바뀌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커졌다. 2016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21곳은 의료급여제도 상 종합병원으로 구분됐었는데 2017년부터는 모두 3차 의료급여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3차 기관의 심결진료비는 2016년 4584억 원에서 2017년 6832억 원으로 49%나 증가했다. 동일기간에 2차 기관은 3조9493억 원에서 3조9888억 원으로 1% 올랐고, 1차 기관은 1조2263억 원에서 1조2857억 원으로 4.8% 증가했다.

· 진료비 규모 자체는 요양병원 1조6073억 원, 종합병원 1조4254억 원, 약국 1조1782억 원 순이었다. 의료급여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행위별수가가 정액수가보다 높아졌다

· 의료급여 행위별수가는 6조9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4975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1,096억 원) 감소했다. 특히, 정신과 정액 진료비는 7596억 원, 정액 외래진료비는 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4%, 70.2% 줄었다. 이는 정신과 환자를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시설에 장기 입원시키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재활을 시도한 것과 관련이 높다. 과거엔 환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고 약물을 투약하였는데, 최근 지역사회 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환자가 집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살면서 일상생활 기술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점차 동화되면서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줄었다.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위하여

· 의료급여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노동능력이 약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이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으로 분류된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시 1000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입원시 무료이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시 10%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입원시에도 진료비의 10% 가량을 낸다.

·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의 의료보호 제도를 기초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을 개정하고 제도 명을 ‘의료급여제도’로 개정하였다. 2003년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보상제, 의료급여 진료절차 개선 및 급여 사후연장승인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탈락자에 대한 한시적 보호 및 자활 특례자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적절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

· 의료급여 지급이 연간 7조원에 육박한 것은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제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 한도액’ 등이 적용되어 실제 본인부담률은 낮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질환 자체가 늘어서다. 의료급여로 지원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의 종류가 늘면서 급여 지급이 증가했다. 2017년 중증질환 급여비는 2016년에 비해 7.0%, 희귀질환 급여비는 3.7% 늘었다. 치아 구조 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비도 9.4% 증가했다. 고령화로 병원을 찾는 저소득층 노인이 더 많아진 것도 이유다. 2017년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3354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7.9%가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의 비율은 34%이지만, 급여비는 47.8%를 차지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65세 미만으로 의료급여 2종인 사람도 점차 노인이 되면 1종으로 바뀐다. 이는 입원시 본인부담금 10%를 냈던 사람이 무상으로 바뀌기에 입원을 더욱 손쉽게 선택할 것이다.

· 의료급여의 급여비를 낮추기 위해 수급자가 외래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입원을 장기간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정신과 환자는 지역사회에 재활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 장기간 입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가차등제를 시행한다.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여 정신과 환자의 장기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도 보다 활성화시켜 수급자가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시켜 삶의 즐거움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 오남용을 넘어 환자로 살기보다 주민으로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과거엔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비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2019년에는 44%) 이하인 국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당사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수급자가 선정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국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혼자 살면서 자녀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독거노인도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고, 그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양비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이제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173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 수급자가 늘어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즉 부모세대의 부양의무자는 자녀이고, 자녀세대의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다. 어떤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도 자녀중 한사람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이를 초과한 금액에 부양비를 적용했다. 미혼으로 함께 살 경우에는 자녀 소득의 전액이 가구 소득 인정액으로 산입되고, 따로 살 경우에는 중위소득 초과액의 30%, 기혼인 경우에는 아들과 며느리는 초과액의 30%, 딸과 사위는 초과액의 15%가 부양비로 산정되었다.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비혼가구 등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비가 산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가구원수가 많고 대도시에 살면 더 많은 주거비가 들기에 급여액이 더 많고, 가구원수가 적고 농어촌에 살면 급여액이 덜 지급된다.

· 2019년 주거급여의 최대액은 1인가구는 서울 233천원, 경기·인천 201천원, 광역시 163천원, 그 외지역 147천원이다. 2인가구는 각각 267천원, 226천원, 178천원, 161천원이고, 3인가구는 316천원, 272천원, 213천원, 194천원이며, 가구원수가 4명 이상으로 늘면 주거급여 액수는 더 많아진다.

· 주거급여는 최대액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 등에 의해 지급된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1인가구는 233천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가구가 월임대료 20만원이면 주거급여로 20만원을 받고, 임대료가 25만원이면 23.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직접 현금(혹은 통장)으로 받지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4개월부터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된다. 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 등에 살 경우에는 주거급여는 관리사무소에 바로 지급되기도 한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을 알면 도움이 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과 이전소득 등을 합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 2019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30%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소득인정액이 44%를 넘더라도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그런데, 소득인정액에 산정되는 소득 중 일부는 공제되고 가구 특성별 지출도 공제된다는 것을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 중 ‘시간외 수당’과 같이 초과 근로소득은 공제된다. 대학생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월 40만원은 우선 공제되고, 나머지 소득도 30%는 추가로 공제된다. 어떤 대학생이 월 60만원을 번다면 4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30%인 6만원도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은 14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돈도 교재구입비, 학원비, 학교등록금 등으로 증빙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가구원의 교육비도 공제된다. 가족 중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암 등으로 치료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비가 공제된다. 가구원 중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은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산정하지만, 당사자가 각종 서류로 증빙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보다 낮출 수 있다.

·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비가 나온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낮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복지로’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가구,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 바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때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고,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급여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

온누리 상품권, 설에 사용해 보세요

· 설에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전국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설에 쓰면 3석 1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설 명절과 평창올림픽'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을 10%까지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 상품권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알아본다.

▶ 온누리 상품권이란

·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상품권으로 2009년 7월 처음 발행되었다. 전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다른 가게에서도 대부분 받아준다.

·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이 있다. 종이형은 5000원 권과 1만 원권이고, 카드형은 5만 원권과 10만 원권이다. BC카드를 본사 방문이나 전화(02-3475-8491)로 구매할 수 있고, 농협 등 은행은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와 인터넷/ISP 등록 후 온누리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온누리 상품권, 10% 싸게 구할 수 있다

· 온누리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2018년 2월 28일까지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구매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더 많이 필요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면 될 것이다.

· 설 전에 구입하면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서 살 수 있고, 2월 28일까지는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설 전에 구입하여 설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하거나, 설 선물용 혹은 세배돈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길 원하는 사람은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등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해 현금으로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체 할인규모는 2500억 원 내외이니 관심있는 사람은 서둘러 가기 바란다.

·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서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당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정했다.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거나 부정 환전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추진한다. 주요 품목의 10% 내외 할인과 함께 경품 이벤트, 전통문화 체험행사, 노래자랑 등 프로그램도 진행되니 관심있는 사람을 참여하기 바란다.

· 또한 전통시장쇼핑몰(온누리마켓) 등에서는 지역특산품 판매와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2월 한달 간 진행한다. 참여하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사람풍경, 온누리시장 총 5개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벤트 기간은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이다. 해당기간 중 구매 고객 대상으로 추첨하여 200명에게 온누리전자상품권 5만 원권을 준다.

· 따라서 집에서 가까운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가로 구입하고, 그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이나 전통시장쇼핑몰을 이용하면 그곳에서 또 10%를 할인받으면 알뜰구매를 할 수 있겠다.

·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에 전통시장을 살리고 평창올림픽 특수를 전통시장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날씨가 추우면 승용차 등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장이 넓은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이용하기 쉬운데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여 전통시장도 이용해보자.

▶온누리 상품권, 1조8000억 원 팔렸다

·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판매된 온누리 상품권은 1조742억6000만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6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 1658억 원, 대구 1166억 원, 경기 1030억 원 순이고, 광주 467억 원, 전남은 393억 원이었다. 소비자가 상품권 사용에 익숙한 대도시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했다.

· 상품권의 주된 구매자는 기업이고, 다음은 공공부문과 개인이다. 기업은 9123억원을 구매하였는데 작년에 비교하여 조금 줄었고, 공공부문과 개인은 작년보다 조금 더 구매했다. 온누리 상품권을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선물용이나 포상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도중기청은 판매촉진을 위해 시·도청, 시·군·구청 등 지자체를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구매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에 구매협조 서한문 등을 발송했다.

▶온누리 상품권, 강매는 곤란하다

· 일부 직장인들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복지포인트는 옷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여가생활을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바람직한 방법은 온누리 상품권 할인과 같은 매력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상품권의 판매를 늘리고, 직장에서 직원에게 줄 때에는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선택의 폭을

주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1인당 20만 원씩 일률적으로 배당하기보다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설 선물용으로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설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다. 연령을 고려하여 설 선물을 구입하다보면 나이가 드신 분께는 건강식품이나 내의 등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선물을 하는 사람이 다수이면 받은 사람은 비슷한 선물을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평소에 잘 먹지 않는 건강식품을 선물로 받았을 때, 선물을 받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하거나 현금을 봉투에 담아 드리기도 하는데, 온누리 상품권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다. 만약, 선물을 받는 사람의 집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온누리 상품권이 요긴할 것이다.

· 설에 차례를 지내는 경우에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가 많다. 이때에도 미리 농협이나 우체국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한 후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필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대추, 사과 등 과일과 홍어 등을 구입해본 적이 있는데 할인점이나 백화점보다 싼다. 설의 정취를 느끼고 추억도 느껴볼 겸 이번 설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갖고 전통시장을 찾아보자.

전통시장쇼핑몰(온누리마켓) <http://onnurimarket.kr>

비만은 질병,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비만은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한때 통통한 몸매는 ‘우량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비만은 질병으로 간주된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2005년 31.3%에서 2016년 34.8%로 증가했다. 성인 3명 중 1명은 체질량지수가 25를 넘는다. 체질량지수가 30을 넘는 고도비만 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3.5%에서 5.5%로 늘었다.

비만인구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년~2022년)’을 확정했다. 이 대책을 통해 2022년 추정 비만율 41.5%를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한국인의 비만 실태와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다.

▶한국인은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

한국인의 비만은 성인 남성 비만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이들의 비만율은 2005년 34.7%에서 2016년 42.3%로 증가했다. 성인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이유는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이나 저녁에 잦은 회식을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은 32.4%가 아침을 먹지 않고 45.8%가 하루 한 차례 이상 외식을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성인 여성은 자주 집에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하여 비만율의 증가 속도가 주춤했다. 같은 기간에 성인 여성 비만율은 27.3%에서 26.4%로 조금 줄었다. 여성이 다이어트를 더 실천한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도 심각하다

아동과 청소년 비만율도 심각하다. 초·중·고교 학생 비만율은 2008년 11.2%에서 2017년 17.3%로 늘었다. 학생 비만율의 증가는 신체활동에 쏟는 시간은 준 반면 햄버거·피자·튀김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초등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업시간은 늘고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할 시간은 줄기에 학생의 비만율이 증가했다.

건강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 고도비만율은 고등학생에서 높았다. 고교 남학생의 3.7%, 여학생의 3.3%가 고도비만으로 이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이들은 땀이 나는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었다. 주 3일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하게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고등학생은 24.4%에 그쳐 초등학생(58.3%), 중학생(35.7%)에 비해 낮았다. 고등학생의 80.4%가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답했다.

▶비만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키운다

비만은 개인적인 손실을 넘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몸이 뚱뚱해지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며, 조기에 사망할 수도 있다. 비만인은 정상인에 비해 당뇨·고혈압 등 각종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 당뇨는 비만일 경우 발병률이 정상인 대비 2.5배, 고도비만일 경우 4배까지도 높아진다. 고혈압도 정상인에 비해 비만인은 2배, 고도비만인은 2.7배가량 발병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비만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키운다. 건강보험공단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2015년엔 9조2000억 원으로 추계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비 5조4000억 원, 조기사망손실액 1조6000억 원, 생산성손실액 1조4000억 원, 간병비 5000억 원, 교통비 3000억 원 등이었다. 비만으로 질병에 걸려서 손실, 먼저 사망하여 손실, 치료중에 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뜻이다.

▶비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다

정부가 세운 종합대책은 크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신체활동 활성화·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비만은 먹는 것이 살로 가는 현상이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대책의 지름길이다.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동이 소아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고,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기 위해 이 단계부터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점차 확대기로 했다. 출산 전·후,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모유수유 교육도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등은 모유수유를 아동비만 예방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을 연차적으로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체활동을 통해 열량을 발산시킨다

비만을 막기 위해 음식으로 흡수된 열량을 신체활동으로 발산시켜야 한다. 비만을 막으려 음식을 적게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침을 굶으면 허기를 참지 못해 점심이나 저녁식사에 폭식하여 많은 열량을 섭취하기 쉽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신체의 균형적 발달을 위한 대근육활동 등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을 배우는 시간이 많고, 이러한 과목이 상급학교 입학시험에서 비중이 크다. 체육 등 신체적인 활동이나 음악, 미술 등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은 과소평가된다. 학생수의 감소로 입학 경쟁률이 낮아졌지만 학교의 풍토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증진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성인 대상 비만예방관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성인이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쓰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을 제공하려고 한다. 비만의 예방과 관리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달성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비만은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고도비만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국민적 참여가 중요하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서구식 식생활로 고열량 식품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비만은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닌 ‘사회적 관심사’라는 인식을 갖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비만은 질병이지만,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개입하여 치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렇게 설립된다

·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이 설립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포럼’에서 안이 발표되었다. 공론을 거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면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설립될 것이다. 정부는 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는가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단이 직영하면 공공성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

· 대통령 공약은 국가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구상되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에 ‘시·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시설도 많기에 ‘공단’이란 명칭보다 ‘진흥원’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어떻게 설립될 것인가

· 제1차 사회서비스포럼에서 논의된 사회서비스진흥원은 17개 시·도별로 설립되고, 진흥원 1개소당 평균 직원은 70명이고 연간 운영비는 36억 원으로 구상되었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3400개를 직접 운영한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공립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동안 ‘구립 어린이집’은 구청이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공공어린이집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이 수탁하여 운영하였다. 말만 ‘구립’이고 실체는 ‘법인’ 어린이집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름만 공공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의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 교육청이 ‘공립’ 초등학교를 지어서 ‘사립’ 학교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고, 시·군·구가 보건소를 지어서 ‘민간 병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호받기 어려운 극소수 요보호 대상자를 위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을 운영하던 시대에서 모든 국민이 욕구에 따라 언제나 어디서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정부는 기존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였다. 이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만들어서 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등을

직접 운영하려는 것이다.

· 따라서 시·도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운영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환경, 경영·재무·회계 관리, 노사 분규, 민원 대처 등 업무를 지원하고 인력의 직접 고용,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수행한다. 관할지역 내 적절한 국공립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변 민간 시설과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의 기대 효과

·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설립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며 지위가 향상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제3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보험 수가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의 처우는 시설(장)에 따라 다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생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을 직영하면 직원의 처우는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우려

· 사회복지계는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립 어린이집 등을 수탁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정부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오랫동안 운영했던 복지시설을 진흥원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듯이 사회복지시설도 설립 주체별로 특성을 갖고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새로 설치되는 복지시설과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진흥원은 공립 어린이집,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최우선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점차 지역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아이돌봄, 정신건강, 중독관리기관 등을 진흥원이 직영할 것이다. 또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을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하고, 해당 시설 근무자는 진흥원 소속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보장한다.

·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던 시설도 노령 등으로 운영을 포기하고자 할 때 해당 시설의 인력을 이어받아서 전문성을 키우

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전망과 과제

· 포럼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성숙되면 한 곳당 예상되는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직원은 3000~5000명이 될 것이다. 17개 진흥원이 직영하는 시설은 3400개가 되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하게 된다.

·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가 4000개소가 넘고, 어린이집이 4만3000개소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직영하는 시설이 3400개소라면 사회복지시설 중 극히 일부이다. 진흥원은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해야 한다. 마치 공립학교가 사립 학교와 차별없이 국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일하듯이 진흥원은 이곳에 속한 시설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포럼을 통해 전문가, 시설장과 직원, 이용자와 가족, 공무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근무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인권에 기반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복지정책 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청소년인권 보고서(1997),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복지는 생활이다(2001), 디지털 청소년복지(2004), 디지털 복지시대(2004), 디지털 사회복지개론(2011), 한국사회복지론(2012), 한국청소년복지론(2012), 산티아고 가족여행(2012),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2016),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2018), 복지공동체와 복지국가(2018) 등 50여권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국제사회복지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인증분과위원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일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대표이다.

이 메 일 ewelfare@hanmail.net

카 페 http://cafe.daum.net/ewelfare

생애주기별 복지상식

펴낸날 2019년 3월 1일

발행인 이용교

저 자 이용교

펴낸곳 드림미디어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68, 2층(대광빌딩)

전 화 062-520-8000

정 가 15,000원